

인권정보자료실  
Mml.8

# 우리가 외면한 동포들

##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 백서 1999-2000



OSAMA - 민족소금학교

역사가 영순 민족: 재일 조선인

2000. 12.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공동대표 양영미, 이태호 (110-071)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71번지 삼록빌딩 503호  
Tel. (02)735-4327 Fax. (02)735-4328 e-mail kin@kin.or.kr 인터넷 http://www.kin.or.kr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백서 1999-2000

KIN 지구촌동: 인권정보자료실 Mml.8



**Korean International Network(KIN)**

- Tel. +82-2-735-4327 ■ Fax. +82-2-735-4328
- Web-site www.kin.or.kr ■ E-mail kin@kin.or.kr
- Address (110-071) Rm.503, Samrok Bldg., 171, Dangju-Dong, Chongno-Gu, Seoul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는 지구촌 동포청년들이 참여하는 진보적 네트워크로서 동포사회 및 지구촌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KIN -Progressive Network of Korean youths world wide and of Korean ethnicity for mutual exchange, cooperation, & solidarity

# 우리가 외면한 동포들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 백서 1999-2000



OSAKA 민족초급학교

한사대 민주민족 해방추진단

2000. 12.

## 발간사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어 발효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동포사회의 강한 반발 속에 만들어진 이 법은 재외동포법이라고 명명하기에는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실제 해외동포의 1/2밖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러동포, 재중동포, 일본국적 및 무국적의 재일동포 등 300만 명을 넘는 우리 동포들이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들은 해외동포가 아니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이 동포로 부르기를 거부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민족이 고통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던 시절,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의 학정을 피해 혹은 일제의 강제징용에 의해 부득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우리의 혈육입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조국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이 그들이 유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역사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들의 투쟁과 고통을 통해 건설된 나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은 수난은 반세기 혹은 한 세기가 제대로 보상받기는커녕 그들의 처지가 그들을 또 다른 질곡으로 내모는 아이러니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외동포법의 동포규정은 재중 조선족 동포들의 대거 유입을 막고 재미·재유럽 동포들의 출입국 절차는 완화하려는 책략의 결과로 고안된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동포는 동포가 아니다." 재외동포법은 그들의 고통을 이런 방식으로 또 다시 모독하고 있습니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는 지난 99년 6월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재외동포법을 모든 동포에게 적용함으로써 이 법이 더 이상 동포차별법의 오명을 벗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백서는 제대로 된 재외동포법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기록이며 우리 해외동포정책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보여주는 일그러진 자화상의 일부입니다.

그 동안 '제대로 된 재외동포법'을 위해 땀 흘리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부끄러운 법안이 하루 빨리 개정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2000. 12 지구촌동포청년연대 공동대표 양영미

## Publication Address

One year has already passed since the Act regarding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hereafter, the Overseas Koreans Act) was enacted and came into effect.

This Act, which faced the strong opposition from NGOs and overseas Korean societies, has fatal defects to be named "The Overseas Koreans Act". This Act covers only half of overseas Koreans. Over 3,000,000 overseas Koreans, including people residing in Russia, China, Japan were excepted. At least for the last one year they have not been Overseas Koreans.

Who are the people that were refused to be named Overseas Koreans? These are the ones that had to leave our homeland against their will to escape the Japan's tyrannic governing and the forced conscription, or to fight for independence of Korean Peninsula. Most of them did not leave voluntarily. The yoke of Korean history forced them to live wandering lives.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painful life history?

We should remember the fact that our country, Korea was founded through the suffering and struggle of these people. However, for the last half century, they have not been compensated for their suffering. All the more their situation has been aggravated up to now. The present Overseas Koreans Act can be regarded as the result of strategem that blocked up the possibility of the mass influx of Chosun-joks in China and to relax the immigration control of overseas Koreans in America and Europe. "Overseas Koreans in poor countries are not Overseas Koreans." This is how the Overseas Koreans Act offered insult to their history of suffering.

Korean International Network(KIN) has been fighting to adapt this law to overseas Koreans around the world for the last one and a half year since June 1999. This report shows the activities of our country's NGOs to make a 'just', 'historic' Overseas Koreans Act, and is also the portrait of our policy regarding the Overseas Koreans. I would like to show a deep honour to those who have worked for a just Overseas Koreans Act. Also I pray that this Law should be revised.

2000. 12 Yang, Youngmi Co-representative of Korean International Network(KIN)

# 글 심는 순서

발간사 Publication Address

활동일지 8p

## <1부> 2000년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 제1차 워크샵 (2000.8.7)  
사업제안서 13p / 회의록 27p
- 제2차 워크샵 (2000.10.13)  
발제문 33p / 회의록 42p
- 제3차 워크샵 (2000.11.21)  
발제문 51p / 회의록 79p
- 공청회 관련자료 (2000.11.28)  
발제문 87p
- 참고자료  
법률 및 시행령 139p / 법률 해설 : 법무부 155p / 법률 보안 대책 : 법무부 169p  
재외동포법안 분석 : 노영돈 교수 174p / 조선족 문제 : 최우길 교수 179p  
조선족 최광범 수기 186p

## <2부> 1999년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운동

- 국내 성명 모음 203p
- 해외 성명 모음 219p
- 관련 기사 227p

## <3부> KIN 소개

- KIN 소개 235p
- KINEX-America 240p
- KEEP (Korean Exposure & Education Program) 소개 245p

## 2000년 활동일지

- 2000년 6월 6일 기획사업부, 교류사업부로 체제 정비
- 2000년 6월 29일 기획사업부의 주요한 활동으로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상징  
재외동포법 설문지 작성 및 KINEX-Ameriaca팀 설문조사
- 2000년 7월 10일 서울시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으로 "재외동포법 공청회" 승인
- 2000년 7월 18일 기획사업부 1차 세미나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역사"
- 2000년 7월 25일 기획사업부 2차 세미나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주요 논점 정리"
- 2000년 7월 28일-30일 KIN 활동가 수련회
- 2000년 8월 5일 일본 재일 한청련 재외동포법 설문 조사
- 2000년 8월 7일 제1차 공개워크숍(사업설명회)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역사와 전망"
- 2000년 9월 17일 기획사업부 내부워크숍 "재외동포 다큐멘터리 시청 및 토론"  
및 활동가 실무교육
- 2000년 9월 24일 기획사업부 2차 내부워크숍 "재외동포 이민의 역사"
- 2000년 10월 13일 제2차 공개워크숍 "재외동포와 재외동포법"
- 2000년 10월 14일 재일 한청련 교류프로그램에 참석
- 2000년 11월 5일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 2000년 11월 14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조선족교회와의 연석회의
- 2000년 11월 21일 제3차 공개워크숍 "재외동포법 개정안과 개정운동의 방향"
- 2000년 11월 28일 재외동포법 공청회 "재외동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 2001년 1월 05일 백서 발간

## 1999년 활동일지

- 1998년 8월 재외동포특별법안 법무부 추진.
- 1998년 12월 24일 법무부 수정법안(과거국적주의) 국회에 계류.
- 1999년 6월 24일 시민단체 1차성명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관)
- 1999년 7월 13일 KIN 긴급토론회 개최, "재외동포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1999년 8월 3일 49개 시민사회단체 2차 공동성명서(KIN주관)
- 법사위원 15인, 3당 정책위 공문, 청와대에 공동성명서 발송

- 1999년 8월 5일 법사위 상임위에서 법사위 소위원회로 회부
- 1999년 8월 7일 KIN-PEACE21 공동주관, 천안역 시민서명 캠페인  
(시민 1000여명 서명동참)
- 1999년 8월 10일 시민사회단체(KIN,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이종훈 국회연구관 조귀열 국회법사위 사무관 법무부입안담당  
검사3인/국회소위원장(최연희의원) 면담.
- 1999년 8월 11일 법사위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
- 1999년 8월 12일 국회본회의 통과
- 1999년 8월 12일 국내시민사회단체 및 재중동포들 명동성당 단식농성시작
- 1999년 8월 15일 KIN, 인사동 시민서명 2차 캠페인 (시민 1,000여명 연대서명동참)
- 1999년 8월 17일 국내 64개시민사회단체 3차 공동성명 발표, 대통령공개서한
- 1999년 8월 19일 광화문 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
- 1999년 8월 21일 명동성당 단식농성 해단
- 1999년 8월 22일 KIN, 인사동 시민서명 3차 캠페인 (시민 1,000여명 연대서명 동참)
- 1999년 8월 23일 헌법소원심판청구(청구인 재중동포3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이석연)
- 1999년 8월 27일 탑골공원 범시민사회단체 및 해외동포단체 연대집회
- 범시민사회단체 4차 공동성명서 발표, 해외연대성명발표
- 1999년 8월 29일 KIN, 인사동 시민서명 4차 캠페인(시민 1,500여명 연대서명 동참)
-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법 공포
- 1999년 12월 3일 재외동포법 시행일



## 2000년 /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 제1차 공개워크숍(2000. 8. 7)
- 제2차 공개워크숍(2000. 10. 13)
- 제3차 공개워크숍(2000. 11. 21)
- 재외동포법 공청회(2000. 11. 28)
- 참고자료 모음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사업계획서

“차별없는 하늘아래”

##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2000. 8.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전화 +82-2-735-4327 ■ 팩스. +82-2-735-4328
- 웹사이트 [www.kin.or.kr](http://www.kin.or.kr) ■ 이메일 [kin@kin.or.kr](mailto:kin@kin.or.kr)
- 주소 (110-071)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71번지 삼록빌딩 503호



“차별없는 하늘아래”

P3. 시업 취지

■ 소외된 동포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 다문화의 공존과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 21세기 개방적인 공동체를 위해

P4. 시업 개요

■ 재외동포의 삶을 들여다보아 ■ 문제를 분석하고 ■ 대안을 마련하여 ■ 아는 것을 힘으로

P5. 주요추진사업

■ 설문조사 ■ 워크샵 ■ 공청회 ■ 개정운동

P6. 부문별 추진사업 1

■ 설문조사 및 분석 ■ 표본집단 구성 ■ 설문조사 ■ 결과분석

P7. 부문별 추진사업 2

■ 1차·2차 워크샵 ■ 사전 워크샵 ■ 1차 워크샵 ■ 2차 워크샵

P8. 부문별 추진사업 3

■ 법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연대망 구축 ■ 공청회 ■ 백서 발간

P9. 부문별 추진사업 4

■ 법률안 청원운동 ■ 연대기구 건설 ■ 여론 형성, 대정부 접촉 ■ 법률개정청원

P10. 하반기 사업계획

■ 설문조사사업 ■ 자문위원위촉 ■ 공개 워크샵 ■ 법률안 공청회 ■ 백서 발간

P11. 활동의 단위

■ 분야별 활동단위 ■ 전문가 그룹 ■ 대학생 그룹 ■ 사회단체 ■ 해외동포

P12. 참여 프로그램

■ 참여 프로그램 ■ 교육사업 ■ 연구사업 ■ 홍보·기획사업

P13. Epilogue

■ 정현중, 「비스듬히」

###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기본취지

#### 소외된 동포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부자집으로 시집간 딸은 자식이요, 가난한 집으로 시집간 딸은 자식이 아니냐?”

1999년에 9월에 공포, 12월에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에 이주를 한 중국동포(조선족) 약 200만명, 구 소련지역의 동포(고려인) 약 50만명, 무국적재일동포(‘조선적’) 약 15만명을 포함하여 정책대상의 과반수가 넘는 수백만명의 재외동포들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21세기, 개방적인 공동체를 위해

“2백만의 조선족사회도 포용하지 못하는 한국이 어떻게 2천만의 북한을 포용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세기, 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적이고 개방적인 민족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 다문화공존과 소수자인권을 위해

“만약 이제 전쟁이 다시 한번 난다면 난 총을 들고 선참으로 한국으로 와서 한국 놈들을 쏘 죽이겠다”

다름을 이유로 한 차별, 소수자에 대한 억압, 그 이품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지고 소수자의 인권이 옹호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핵심개요

### 재외동포의 삶을 들여다보아

재외동포에 대한 설문을 통해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합니다.  
설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운동의 출발점으로 합니다.

### 문제를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문제점의 정확한 인식은 올바른 대안 마련의 기반입니다.

### 대안을 마련하여

대체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를 발간하여 개정운동의 지침으로 활용합니다.

### 이는 것을 힘으로

연대단위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회적 여론으로 만들어 냅니다.  
정세와 조건을 고려하여 대체법안을 입법청원합니다.

## 주요사업

## 주요 추진 사업

### 1 설문 조사

- 표본집단 구성  
각국 동포의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집단을 구성
- 설문조사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 현지방문 및 국내 조사
- 결과분석  
정밀한 자료 산출

### 2 워크숍

- 자문위원단 구성  
각계 전문가그룹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 1차 워크숍  
문제인식 및 연대단위 형성
- 2차 워크숍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 시작

### 3 공청회

- 연대망 구축  
전문가 그룹, 사회운동단체, 학생단위 등
- 공청회  
대체법안 마련
- 백서 발간  
그동안의 운동의 성과를 총집결

### 4 개정 청원

- 연대기구 건설  
전사회적인 영향력 행사
- 여론 형성, 대정부 접촉  
지속적인 기획, 다채로운 행사
- 법률개정청원  
정세와 조건을 고려한 기동적인 대응

## 설문조사 및 분석

### I. 표본집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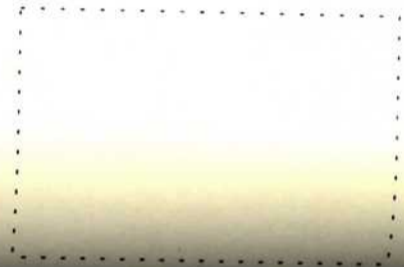
- ① 국내외 해외동포라는 광의의 개념을 사용
- ②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를 한 중국동포(조선족), 구 소련지역의 동포(고려인), 무국적재일동포('조선적')를 고려
- ③ 각 나라에 있는 동포의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집단을 구성
- ④ 현실적인 조건에 맞는 조사방식

### II. 설문조사

- ① 중국 : 국내 조선족 - 외국인노동자협회의, 한중동포신문과 협조
- ② 일본 : 현지 동포 - 재일한청련, 두레교회 등과 협조
- ③ 미국 : KINEX-America(KIN의 교류사업부), 버클리한국학위원회(CKS), 재미동포청년(KEEP기획단) 등과 협조
- ④ 그 밖에 독일, 러시아 등

### III. 결과분석

- ① 전문단위에 통계 위탁으로 정밀한 자료 산출
- ② 쟁점사항의 경우 특화하여 의견수렴 장치를 마련
- ③ 9월 중순까지 완결, 워크샵·공청회 자료 및 백서 내용



## 1차·2차 워크샵

### I. 자문위원단 구성

- ① 8월 말까지 완료
- ② 각계 전문가 그룹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 ③ 재외동포법의 쟁점과 문제점 전반에 대한 검토, 개정운동의 정책과 조직 자문, 대체법안 마련
- ④ 향후 확장된 연대체에서 정책위원, 실행위원 담당

### II. 1차 워크샵

- ① 9월 마지막주 금요일(가안) 진행
- ② 재외동포법 철회운동의 역사와 쟁점, 운동단체의 현황, 재외동포의 현실에 대한 이해
- ③ 현재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
- ④ 향후 연대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 마련

### III. 2차 워크샵

- ① 10월 마지막주 금요일(가안) 진행
- ②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 비교, 대체 법안에 대한 기초적인 상 논의
- ③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



## 법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I. 연대망 형성

- ① 전문가 그룹 : 민족문제, 법률, 인권 관련 학자, 전문가, 운동가 등
- ② 사회운동단체 : 조선족 문제,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사회운동단체
- ③ 학생단체 : 국제연대, 개방적 민족주의,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학생단체
- ④ 해외동포 : 각국 해외동포 단체, 일본·중국·미국·독일·러시아·남미 등

### II. 공청회

- ① 그동안 진행한 설문조사, 워크숍 등의 성과를 총괄
- ② 구체적인 대체법률안 마련
- ③ 준비과정에 형성된 연대망에 향후의 지속적인 운동을 제안
- ④ 대체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작업을 계획

### III. 백서 발간

- ① 운동의 취지와 진행과정, 설문조사, 워크숍 내용, 대체법안, 향후 과제 및 계획
- ② 법안마련까지의 준비과정을 일단락 짓고, 향후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풍부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 ③ 앞으로의 계획과 연대단위 제안 부분을 구체적으로
- ④ 향후 내용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설정



## 법률안 청원운동

### I. 연대기구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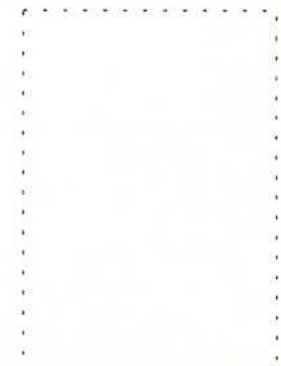
- ①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형성된 연대망과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기반
- ② 정세적 조건, 각 단체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위의 연대를 제안
- ③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연대단체의 주요사업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제안
- ④ 수평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관계망 구축

### II. 여론화 형성 대정부 접촉

- ① 지속적인 기획, 다채로운 행사
- ② 꾸준한 여론형성(정기집회, 시민강좌 등)과 구체적인 사건에 대응하는 기동적인 여론전 병행
- ③ 대정부 비공식 내부 접촉(담당 실무자, 입법조사관 등)과 공식적 대응(성명서 발표, 정보공개청구 등) 병행
- ④ 대중과의 직접 접촉, 인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추진

### III. 입법청원

- ① 워크숍, 공청회, 백서 발간 과정에서 꾸준한 관계 형성
- ② 민족감정이 크게 여론화될 때(예를들어 2002년) 정기국회에 상정
- ③ 장기적인 관점으로 준비하면서도 갑작스런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준비
- ④ 집요한 여론형성과 직접행동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정형 마련



## 하반기 사업계획

### 하반기 주요사업

서울시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프로젝트

#### 설문조사사업

8월 말 회수  
9월 통계 및 분석 완료

#### 자문위원위촉

8월 말 위촉 완료

#### 공개워크숍

9월 말 1차 워크숍  
10월 말 2차 워크숍

#### 법률안공청회

11월 중순

#### 백서 발간

11월 말 발간

## 활동의 단위

### 분야별 활동의 단위

#### 1 전문가 그룹

- 정책지문  
개정운동의 방향, 정책 등 자문
- 조직지문  
개정운동의 연대사업, 기획 등 자문
- 법률연구  
대체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 2 대학생 그룹

- 연구팀  
정책, 조직, 법률안 연구
- 홍보·기획팀  
여론화, 언론 대응, 퍼포먼스 등 각종 기획사업
- 사이버팀  
개정운동 사이트 운영, 사이버 운동

#### 3 사회 단체

- 민족운동 관련단체  
해외동포와 연대, 관련사업 진행
- 소수자인권 단체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보호 및 제도개혁
- 연구단체  
관련분야 연구, 대안 마련

#### 4 해외 동포

- 동포단체  
해외동포의 지위 향상 및 동포교류
- 청년운동단체  
젊은 세대의 특성을 살린 운동
- 언론기관  
해외동포사회의 여론을 형성

### 참여 프로그램

#### 교육사업

- ◆ 내부토론회
- ◆ 시민강좌
- ◆ 세미나

#### 연구사업

- ◆ 각국사례연구
- ◆ 대안마련
- ◆ 정책연구

#### 홍보기획

- ◆ 언론모니터
- ◆ 퍼포먼스팀
- ◆ 사이버팀

### Epilogue

---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많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많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받치고 있는 이어.

..... 정현중, 「비스듬히」



## 제1차 공개워크숍 회의록

이선옥 : KIN 회원 이선옥입니다. 오늘 순서는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쟁점사항에 대한 발제 및 질의 토론과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에 대한 KIN의 운동전개 방향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 KIN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쟁점 사항에 대하여 배덕호 사무국장님이 발제하시겠습니다.

배덕호: 참가자들에게 사업내용을 말씀드릴 배덕호입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KEEP회원들에게 영문자료를 준비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은 “차별없는 하늘아래”라는 모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엔.. 재외동포법 개정사업의 목적과 소외된 동포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하나이며, 21세기 한국사회가 개방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한국사회 문화를 다문화 공존과 다양한 소수자의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개정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재외동포법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기술된 내용입니다. 먼저 “재외동포법의 삶을 들여다 본다”입니다. 5개국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를 각계 전문가들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후 전문가들의 분석이 진행된 이후에 대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재외동포법에 대한 개정청원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로.. 개정운동을 하기위해서는 어떤 단계로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설문조사이며, 중국,일본,미국 지역등에 두 번째는 워크샵에 관한 것이며 1차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과 연대모색이며 2차 워크샵은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단계입니다. 세번째 단계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워크샵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사회운동단체 학생단위의 연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서 연대 후에 각계 전문가들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이후 백서를 발간하고 연대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지속적인 시민사회 단체의 캠페인과 행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목표인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9월부터의 하반기 KIN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문조사 리서치는 9월말까지 분

석이 완료됩니다. 공개 워크숍은 10월 말까지 있습니다. 대학생 연구팀, 대학생 홍보팀들도 준비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년 평등한 해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운동에서 많은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개정운동 또한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필수적으로 합니다. 사회단체는 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단체,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동포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정운동에 관하여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옥 : KIN에서 하고 있는 개정운동에 관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 이스라엘의 유대인 법과 비슷한지?

배덕호 : 법무부에서는 과거 국적주의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하고 국적의 소급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중국은 건국 이후 중국 국민에 대한 국적을 1948년 이전까지도 포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법과 한국 재외동포법은 소급되는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옥 : 다음 질문이 없으면 재외동포법 문제점과 쟁점사안 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태호 : 개인적으로 제 조카가 재외동포인데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같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사무국장님이 대강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인이 550만입니다. 남북한을 다합쳐서 7000만이 되니까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해외로 나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미국은 사탕수수밭으로 일하러, 중국, 러시아는 일제 식민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로, 일본의 경우는 전쟁당시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노동자들로 건너가게 된 경우입니다. 분단이후에도 해외로의 이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로의 이주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에 의한 강제적 이주였습니다.

KIN이 재외동포법이라는 주제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법에 대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해외동포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어야 하나? 또 다른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에서 해외동포법은 차별적인 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KIN의 이념 중 하나는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한 것입니다. 해외동포에게만 특별한 것을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조건으로 해외로 나가게 된 우리동포에 대한 책임을 남과 북의 정부는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일본에 가게된 우리 동포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남과 북 어느

곳의 국적도 취득하지 않은 무국적 동포들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직도 그 동포들의 카드엔 "조선"이라는 국적이 명기되어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특히 그 동포들에 대하여 동포들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심지어 북과의 관계로 인하여 불이익마저 주고 있는 실정이며, 조선국적 동포들은 국내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오래 전부터 한국정부에 교민청을 개설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약속을 했었으나 재외동포재단으로 대체되었고 추가적인 법적 지원의 필요 때문에 해외동포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법은 해외동포의 도움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한국은 97년 이후에 IMF를 맞게 됩니다. 한국정부는 당시 달러가 필요하였고 동포들의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동포법 제정시에 미국국적 동포들의 로비가 많이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정부도 주로 재미 동포들을 위하여 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전세계 550만 동포들을 지원하는 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지원하는 동포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동포들의 동포인정으로 인한 국내유입 등을 막기 위해서 과거 국적주의를 채택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중에서 해외로 나간 사람만을 동포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동포의 과반수 이상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난한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에서 대다수 동포들은 독립운동을 위해 1948년 이전에 이주하였습니다. 과거 국적주의를 채택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동포들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골치아픈 일본 조선적 동포에 대해서도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이 법에 적용되는 동포는 미국과 유럽에 국한된 48년 이후의 이주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에 대하여 과거 국적주의가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동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기보다 특수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법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과거 국적주의를 따르지만 48년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의 경우엔 "재외동포법을 중국동포까지 확대할 경우 중국정부가 반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보다 더 배타적인 법을 세계 곳곳에 있는 중국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무부는 결국 중국정부와의 입장차이로 인한 마찰을 피하려 하는 것이며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했지만 이 법은 통과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부자나라 동포만 동포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동포도 동포라는 주장은 혈통주의에 따라서 재외동포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48년 이후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불가피하게 떠나게 된 동포들에게도 적용하고 모든 한민족 혈통의 외국인을 동포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KIN, 시민단체들은 해외동포들에게만 특

혜적인 법이라는 것에는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대다수는 중국 동포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은 중국 동포들에게 혜택을 주자라는 운동과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자라는 운동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동포들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더 보편적으로 넓게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것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재외동포법 제정캠페인 후에 외국인 노동자 보호 단체와 토론한 결과는 재외동포법 개정운동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을 패키지로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재미동포 여러분들이 계신데 재미동포들 또한 이 법이 동포에게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는 어떻게 이런 법이 국한적으로 자신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통과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동포사회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 발제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 : 현재법 재미동포 2, 3세 혹은 부모 중에 한사람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 법에서 제외됩니까?

이태호 :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인이면 이 법에 해당되며 손자, 3세까지도 재외동포법에 해당됩니다.

질문자 : 아까 이태호씨가 발제한 것 중에 해외 동포들에게 특혜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의도를 알고 싶다.

이태호 :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특혜, 즉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 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는데 있어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해외동포라고 해서 소수의 특권이 아닌 대다수의 동포들이 누릴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질문자 : 최종적으로는 이주노동자법을 재외동포법 수준으로까지 만들 계획이십니까?

이태호 : 궁극적으로 완전히 체계가 같을 수는 없지만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상황이 매

우 열악한 상태에서 현재는 어떻게 재외동포법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간의 매치를 시킬지를 연구중입니다.

또한 재외동포법 하나에서도 돈이 오가는 것은 많은 보장하되 사람이 오가는 것을 막는 신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한되고 차별적인 요인의 발생을 어떻게 없애고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 그러면 미국의 입양인들이 문제없이 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태호 :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정 규정에서 한국 국민이었다가 입양된 상태임으로 citizenship과 달리 가능합니다.

이선옥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정도만 KIN이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덕호 :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KIN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입니다. KIN은 99년 2월에 창립하였으며 약 1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KIN의 관심분야는 일제시대의 이주역사 그리고 분단의 역사를 통해서 발생한 이주동포들의 이슈와 인권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노동자 즉 이주 노동자 문제, 사회적 소수자이슈에 대해 연대하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KIN 활동에 관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진을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KIN은 지금까지 16차에 걸쳐 각 국 해외동포 이슈에 관해 월마다 토론을 해왔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평등한 해외동포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KEEP SEOUL COMMITTEE - 한국위원회가 KIN에 있습니다. 올해는 최초로 미국 교류 프로그램인 KINEX-America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LA에 조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라틴아메리카, 러시아, 중국, 미국에 직접가서 체험하고 교류하고 연대할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사회적 소수자 단체들과 연대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 조선적의 국내 입국 자유화에 대한 운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 5년마다 진보적인 해외동포 청년들이 준비하는 포럼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소개를 마칩니다. KIN의 활동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선옥 : 나머지 질문들은 뒷풀이 장소에서 해주시고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개 워크숍

자별없는 하늘아래

## 재일코리안과 재외동포법

### 순서

사회 : 배덕호 (KIN 사무국장)

<발제>

재일코리안의 과거와 현재 - 김수향 (재일동포 3세)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종훈 (정치학박사, 국회연구원)

<자유토론>

2000. 10. 13.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공동대표 양영미,이태호 (110-071)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71번지 삼록빌딩 503호  
Tel. (02)735-4327 Fax. (02)735-4328 e-mail kin@kin.or.kr 인터넷 http://www.kin.or.kr

# 재일코리안의 과거와 현재

김수향 (재일동포 3세)

## [재일동포의 역사]

- 1945년 해방 직전의 통계에 의하면 재일동포는 약 240만 명. 해방 후 180만 명 가량이 귀국하고 약 60만 명이 잔류하게 되었다. 식민지민족에서부터 해방국민으로 GHQ (연합군)이 군사상의 안정이 허용되는 한 해방국민으로 취급하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국민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고 발표
- 1946년 일본정부는, 정당한 정부가 조선반도에 수립되고 이들 국가가 재일조선인을 국민으로 인정할 때까지 해방국민이 아닌 일본국적 보유자로 규정.
- 1947년 외국인 등록령 공포, 시행. 공식적으로 재일교포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면서도 조선인은 동척령의 적용에 관하여는 당분간 외국인으로 본다는 조항을 설치하여 외국인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국가가 조선반도에 없었으므로 국적이 아닌 기호(조선적)로 규정. 외국인등록서의 휴대, 제시의무(얼굴사진과 지문날인)
-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 1949년 이승만정권, 국적란에 <대한민국>을 기재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
- 1950년 일본정부는 등록증 국제란에 <대한민국>기재를 승낙. 그러나 <대한민국> 또한 국적이 아닌 기호
- 1950년 한국전쟁 시작, 귀국행렬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사실상 중단.
- 1952년 외국인 등록법 공포, 시행, 일본국적보유자에서 외국인으로 지문날인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문
- 1953년 통계에서 재일동포의 출신지 구성, 경상도 61%, 제주도 12%, 전라남도 11% 남한 출신이 98%를 차지, 지금까지 변화없음. 국적별 분포는 '조선'이 76.4%, '대한민국'이 23.6%로 조사됨.
- 1959년 제1기 귀국선 출발 (복송)
- 1965년 한일기본조약 조인
- 1966년 한일협정으로 인한 [협정영주] 발효
- 1967년 영주권취득 재일한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 1981년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제정, [특별영주제도] 신설, 국민연금법에서 국적조항 철폐

- 1982년 UN 난민조약 일본에서 발효
- 1986년 [외국인 등록법 일부 개정법] 제정(지문날인 한 번, 외국인등록증 휴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역형 폐지)
-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 1991년 [출입국관리 특별법] 제정([특별영주제도] 신설)
- 1992년 [외국인 등록법 개정법] 제정([특별영주제]의 지문날인 철폐)
- 1994년 김일성 사망, [핵 의혹]으로 인한 민족학교 학생에 대한 사건 발생. 민단을 중심으로 지방참정권 요구운동 개시
-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시  
[총련계 재일동포의 교향방문] 시작

## [재일 조선적]

해방후 일본정부에서 주어진 [조선]이라는 기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재일동포 국적이 아닌 기호를 유지함으로써 법적으로는 난민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국가가 없으므로 여권발급이 되지 않는다. 일본정부에서 발급되는 재입국허가서가 여권 역할을 함. '조선적'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국명의 약자로 인식되어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

민족학교와 조선적의 관계는 민족학교를 운영하는 총련과 깊이 관련이 있다. 총련을 지지하는 사람, 현재는 총련을 지지하지 않지만 과거에 지지한 사람. 민단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총련과 민단 둘 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 통일된 조선을 기다리고 어느 한 쪽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3세 4세인 경우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 실제 일본 공안조사청의 파악에 의하여도 재일교포중 조총련계열은 24만 7천명(36.0%) 선이며, 그중 실제 조총련 조직 활동자는 5만 6천명(8.1%)선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타 약 6만3천명은 중립계로 파악되고 있다. (1994 통일일보)

## [다양화되는 재일코리안]

<1997년 통계>

전체 재일동포	: 약 53만명 (일본 거주 외국인 중 43%)
조선국적 소지자	: 약 15만명
한국국적으로 바꾸는 사람(1년)	: 약 4천명 ~ 5천명

일본국적으로 귀화하는 사람(1년)	: 약 1만명
일본이름(통명) 소유율	: 91.3%
학교생활에서 민족차별을 느낌	: 65.8%
취직차별을 경험	: 40%
일본학교에 다님	: 90%
그 중 통명으로 다님	: 80 ~ 90%
재일동포끼리 결혼	: 16%

### [남북한과 일본이 보는 재일동포]

현재 일본에서는 재일동포를 한국적과 조선적으로 구분하고, 한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조선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정부가 규정하는 조선적의 인식과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정부의 재일동포에 대한 기본입장.(정인섭 교수/ 북일수교와 재일교포의 국적/ 1994)

- 1) 한국 표기자는 그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의미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적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 3) 조선 표기자는 그가 한반도 출신임을 의미하며, 조선은 국호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들은 국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어떠한 입장도 표시하고 있지 않다.
- 4) 국적난 표기를 조선에서 한국으로 변경함은 당사자의 출신지 표시를 정식 국적국으로 변경함을 의미하며, 이에 그는 그가 한국민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한국에서 조선으로의 변경도 당사자의 자유의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기재착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중앙정부가 각자치체의 변경허가 업무를 엄격히 통제하지는 않고 있다.
- 5) 부모의 국적표기가 각각 한국과 조선으로 상이한 경우 자의 국적표기는 부의 표기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 6) 일본정부가 발표하는 거류 외국인 통계에는 한국과 조선을 별도의 국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국조선"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발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조선적을 가지는 재일동포 전체를 북한국민으로 간주. 조선적이 남한과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도록 노력함. 한편 북한 국적법은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국적법 공포일(1963년 10월)까지 조선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를 공화국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은 한국은 그동안 혈통주의 국적법을 근거로 모든 재일교포의 한국적을 인정하여 왔

다. 한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적과 별도의 북한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왔으며, 북한주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든 귀순하는 경우 내국민임을 전제로 하는 법적 처리를 진행시켜 왔다. 따라서 과거에 북한의 노선을 지지하던 조총련계라 할지라도 본인의 신청만 있다면 언제라도 재외국민등록을 받아 주었고, 모국방문사업에 의한 조총련계의 방한도 내국인자격의 출입국으로 처리하여 왔다.

### [조선적의 자유왕래]

조선적에 대한 인식 - "총련계 재일동포의 고향방문" 합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남북한 양국에서는 재일조선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총련계"라는 언어 속에 조선적을 함축시키고 있으며 미디어에서도 남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서 법적으로 조선적은 북한도 남한도 아닌 해방후 일본정부에서 부여받은 기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무국적자이다. 조선적에 대한 규정을 "총련계"로 제한할 경우 총련계가 아닌 중립을 유지하는 조선적들은 영영 남한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재일조선적을 총련계라는 모호한 언어로 규정하지 말고 조선적이라는 법으로 명시된 객관적인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총련계와 북한국적 그리고 조선적 사이의 혼동을 피해야 한다.

### 자유왕래 - 재입국허가서와 임시여권

현재 조선적은 일본 법무성에서 발급하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가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를 받아 외국으로 나간다. 이 허가서는 일본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밖에 없으며 국가가 자국민에게 발급하는 여권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조선적이 모국 방문단 등의 명목으로 남한을 방문할 때 이 재입국허가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대신 남한 정부에서 임시여권을 발급받아 그것으로 남한으로 입국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조선적을 남한국민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중립을 유지하는 조선적들의 대부분은 남북의 어느 한 쪽을 선택하지 않고 조선이라는 무국적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남한이 발급하는 임시여권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냥 남도 북도 아닌 조선이라는 여건으로 남북이 조선적들을 받아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



##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종훈 (정치학박사, 국회 연구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출입국관리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9년 12월 재외동포법 시행이후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숫자는 80명(남 50명, 여 30명)이다. 아직 이용이 활발하지 못하는데, 그 까닭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시행초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크게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당초 이 법 제정을 추진할 당시 내건 제안이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 제한 그리고 경제활동 상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진하고, 이중국적 허용 요구를 선별수용하며, 모국 내 경제활동 제약 완화와 연금지급 허용으로 거주국 국적취득과 정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재외동포법이 이러한 초기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재외동포의 호응도로 보아서는 목표 달성이 그다지 쉽지 않을 듯 하다.

사실, 모국에 투자를 할만큼 경제력이 갖춘 계층은 그다지 두텁지 못하다. 이중국적 허용 요구를 선별수용 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획득하는 절차도 좀 번거롭다.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재외동포로서는 안내를 받기도 쉽지 않다. 특히 우리말이 서투른 젊은 세대 동포의 경우,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더 어렵다. 모국 내 경제활동이 어떤 면에서 편해졌는지도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연금 수혜 계층의 경우 대부분 고령자인 까닭에 거주국 국적취득 유인도 그다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요인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제외시켰다는 데 있다. 국내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장기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재미동포나 재일동포가 아니라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재중동포나 재CIS동포이다. 우리 정부가 동포애나 인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면 어떠한 내외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들 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의 전통적인 반대론에 밀려 이들을 제외시키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독일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는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던 자민족 동포 3, 4세의 모국귀환을 허용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외교부가 모국귀환을 반대했다거나, 관련국이 이를 반대했다는 외신은 접해본 적이 없다. 이들 국가의 선례를 따른다면 우리 정부는 구소련 지역 동포와 재중동포의 국내귀환을 허용하는 동시에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아니, 기본적으로 재외동포가 모국 귀환을 원할 경우 이유 없이 허용해야 한다. 정착지원은 그 다음 문제이다. 더우기 우리는 제국주의 지배를 경험한 나라로서, 제국주의 지배 기간에 발생한 이산 동포를 특별히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정부는 이른바

과거 국적주의가 국제적 관례라는 점을 내세워 이들을 동포의 범주에서 제외시켰으나, 해방 당시 한반도에 거주하던 이들과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대한제국의 후예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이었던 것이다.

우리 한반도의 정체가 대한제국→상해 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이들은 분명 해방 당시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국적법을 제정하고 국정포기 조항을 설치하기 이전까지 이들에겐 국적 포기권도 없었다. 더욱이 우리의 국적법은 최초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관해 규정한 적이 없다. 결국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국적법 제정 당시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헌법 전문의 정신 곧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정신에 따라 당시 한반도 내외에 있던 동포 모두를 포괄한다고 보아야 한다. 명시적으로 국적포기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곧, 이중국적 상태의 재외국민이지,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것이다.

법무부는 '중국 조선족과 독립국가연합(CIS)동포는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우리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적이 없으므로 법률해석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정부수립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국적보유 여부를 가르고 있으나 국적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소속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 정부에 대한 소속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국적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노영돈,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과 CIS한인', 1998). 실제로 이와 같이 보는 법무부의 유권해석도 있다(법무부, 유권해석질의응답집, 제1집, 1963, 3면).

외교부는 과거국적주의가 국제적 관례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 과거 국적주의의 예는 국제관행이라 할만큼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은 전세계의 유대인에게 이스라엘로 귀환하면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끔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원한다면 심지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노영돈, 1998). 만일 우리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라면 국체 또는 법통의 단절이 없었으므로 과거 국적보유 유무를 근거로 국적부여 또는 혜택부여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를 거치면서 국체 또는 법통의 단절을 경험한 나라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거 국적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굳이 과거 국적주의를 적용하려 한다면,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좋다. 현실을 받아들여 이들을 외국국적동포로 간주한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왜 독일, 이스라엘, 그리스처럼 국내 귀환을 허용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좋다. 이것도 분단 상황과 현재의 경제난을 고려하여 이해한다고 전제하자. 그렇다면, 최소한 이들이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돈을 벌어 가는 정도는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

정부는 결국 이런 점을 외면하고 재외동포의 개념에서조차 재중동포, 재CIS동포 등을 제외시켜 버렸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외국국적동포를 규정하고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음으로써 이들 지역 동포를 재외동포, 심지어 외국국적동포의 범주에서도 제외시켜 버린 것이다. 냉정하게 법 논리에 근거하여 따진다면 이들은 더 이상 우리의 동포가 아니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 재외동포 사회가 문제제기를 하자 하위 법령에서 재중동포의 출입국 절차를 다소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서도 재CIS동포는 여전히 고려 밖이었다. 우리말도 잘 모르고 상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배제시켜 버렸다. 아울러 반드시 의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조선적 동포나 재미주 초기 이민 동포의 경우도 제외시켜 버렸다. 이로써 전체 재외동포 560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재외동포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최근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세계 한인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모두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통령과 여당도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개정의 초점은 개념 정의의 수정에 맞추어져야 한다. 차별 없는 개념 정의의 채택이 필요한 것이다. 개념 정의는 그야말로 개념 정의로서 포괄성을 지녀야 한다.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신분의 동포를 제외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현행 재외동포법의 폐기를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일종의 특례법으로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특례법이면서도 기본법 형태를 띠고 있는 특이한 법률로서 입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 이 보다는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특별법'의 형태로 대체하여야 한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재외동포법 기본방향과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이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외교부가 우려하는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백충현외, 「재외동포관련 입법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검토」, 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 98-2, 1998).

외교부는 국회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법무부의 재외동포법 제정 시도에 대해 반대하며 이보다는 하위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것도 한 대안일 수는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지적처럼, 이것은 확정된 정책기준에 따라 국민, 외국인, 재외동포와 관련된 모든 법규정을 분석 검토하고, 하나 하나에 대해 재외동포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일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한 연후에 개정과 제정 작업을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기준의 제시라는 차원에서 기본법은 필요하다(백충현외 1998).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개념 정의 수정과 망라적 정의 도입과 더불어 함께 반영해야 할 것은 재외동포법 제정 과정에서 전혀 기능을 못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지향한 실무조직 결성이다. 이번 법의 제정과정에서 반대론으로 일관하며 정책 총괄부서로서 한계를 드러낸 외교부에 재외동포정책을 계속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총

리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기본법에 담고, 사무국 설치 관련 규정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재단도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로 옮겨야 한다.

## 제2차 공개워크숍 회의록

배덕호 :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법 워크숍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게된 KIN 사무국장 배덕호입니다. 발제자 소개 전에 재외동포법에 관한 자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외동포법 제정운동이 시민단체와 더불어 있었고 개정운동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도자료를 첨부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560만 재외 동포에 대한 법이 동포들을 제외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종훈 : 안녕하세요

김수향 : 안녕하세요 김수향입니다. 제일동포 3세로서 발제를 맡았습니다.

배덕호 : 먼저 제일 코리안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김수향씨가 발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제일코리안에 대하여 역사,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간단하게 발제하겠습니다.

김수향 :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솔직히 확신할 수 없고 사안마다 34세마다 차이가 나므로 제 말이 다 맞는 다거나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마시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먼저 첫 페이지 제일동포의 역사입니다. 1945년부터 2000년 오늘까지 있었던 제일동포 사회의 큰일들을 정리했고 이것들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은 우선은 1945년부터 1947년까지 해방후에 제일 동포들이 계속 일본외국인이 되든지 일본국적자가 되든지 일본정부의 판단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으며 외국인 등록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모든 제일 동포가 조선족이라는 구분을 받았습니다. 이 조선적이라는 것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정부가 명시하는 것으로 임시적으로 붙인 말이며 한반도에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적이라고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것이 1948년입니다. 이때부터 한반도에 정부가 성립이 되었는데 1965년 한일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제일 한국인... 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일 한국인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제일 조선인으로 일본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일본에 사는 제일 조선적들의 모습입니다.

한일협정 이전에 제일 한국인은 제일 조선적이 76.4% 한국인은 23.1% 로 대부분이 조선적이었고 한일협정 이후에 한국인이 되면 일본정부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적으로 남은 사람은 영주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적이 영주권을 가진 것은 10년이 되지 않았고 1992년 조선적들이 영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번에 총련계 제일 동포의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총련계 제일 동포란 조선적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일 조선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제일 조선적이란 해방후에 일본정부에 의하여 주어진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일동포입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것은 국적이 아닌 기호라서 법적으로는 난민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적들은 국가가 없어서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현재 일본정부에서 발급되는 재입국허가서가 여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적이라는 기호가 생긴 것은 1947년 이고 이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조선적이 북한국적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심어졌습니다.

조선적과 민족학교 그리고 총련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련이 운영하는 민족학교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민단이 개설한 민족학교가 일본정부에 3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엔 제일 동포중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제일동포가 총련계 민족학교의 10%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민족학교에는 한국국적 조선국적 일본국적 세 부류의 동포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선적 중에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흔히 말하는 총련과 관계가 깊고 총련을 지지하는 사람, 현재는 지지하지 않지만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 민단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총련과 민단 둘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 - 중립을 지키려는 사람, 통일된 조국을 기다리고 어느 한 쪽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34대는 부모에게 물려받고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일 조선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약 6만명이상이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6만명이라고 말할순 없지만 그정도가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제일 코리안 들의 현황은 매우 다양화되고 있어서 어떤 것이 제일 코리안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구요 그래서 여기에 통계를 말씀드리면 97년도 통계이고 제일 코리안들 - 53만명이라고 하구요 조선적 소지자 15만명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이 45000명,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는 사람이 1년에 약 1만명, 제일 코리안 중에 일본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91%를 넘고 일본학교에 가려는 사람이 90%를 넘습니다. 그 중 일본이름으로 다니는 사람이 90%라 할 수 있고요, 이런 숫자들이 나타내는 제일 코리안 현황은 1세대들은 제일 조선적 제일 한국이라는 자존심, 나라에 대한 애국심 애착이 남아 2,3,4세가 될 수록 어떻게 일본사회에서 잘 살아야 할지에 대한 현실에 대한 생각이 많구요, 제일 코리안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학설이 많은데..간단하게 제일 코리안 중에 조국지향적인 코리안. 즉 통 일된 한반도나 남한 혹은 북한인 한반도를 지향하는 경우입니다. 제일 동포에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자신들은 한반도가 아닌 제일 동포다 라는 지향을 가진 사람들, 한반도에 뿌

리는 있지만 일본이 자기 고향이고 일본을 지향하는 사람들, 민족적 정체성에 관련을 느끼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자유인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인으로서의 변화가 많이 진행되어 1만명 정도가 귀화를 한 상태입니다. 귀화 원인은 일본에서 태어난 3~4세가 된 사람도 있지만, 해방 이후, 남북대립의 양상이 그대로 재일 교포 사회에 투영되어 있다. 남북의 정부가 서로의 나라로 끌어드리려고 해서 지치거나 애착이 없어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개기로 되어 귀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즘들어 지방 참정권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조국 지향적인 사람은 지방 참정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일교포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은 이러한 지방 참정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함이 존재하는 것이 지금 재일동포사회의 현실입니다. 재일 동포들의 이러한 정체성의 다양함이나 분리의 현상은 일급수조가 이뤄진 이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한과 일본이 벌이는 재일교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재일동포를 한국국적과 조선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한국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것이고 법적으로는 물론 그러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본 국적법에 의하면,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조선적이 한반도의 사람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구분이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재일동포 사회 전체를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의 국적이나 일본의 국적으로 바꾸지 못 하도록하는 노력, 조선적을 조선적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그 동안 혈통주의 국적법을 근거로 모든 재일 교포에 한국적을 인정해 왔지만, 교포 사회도 남/북을 철저히 가르는 인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재일 코리안의 형성과 역사에 대해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총련계 재일 교포에 관한 법률이 남아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조선적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적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총련계가 조선적이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지만, 법적으로 조선적은 남한 쪽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적들의 99%가 남한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남한 출신인 조선적들이 한국에 들어오려하면,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한국대사관에서 임의로 총련계인지 아닌지 면접후에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7개국 재일 조선적의 재입국 허가에 대한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7개국 중 남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들이 국적이 없는 조선인으로써 당연히 한국에 들어 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제를 끝내겠습니다.

배덕호 : 지금까지 김수향씨께서 재일 교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발제였습니다. 이어서, 재일 코리안들의 현재 문제는 재일동포들이 재외동포법에 의해 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국적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국적 소유자나, 조선적이거나, 한국국적 소지자 세 부류중 한국국적 소유자는 당연히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겠지만 나머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어서 재외동포법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이종훈 박사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이종훈 :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것을 보면, 시행 이후 그 법에 의해 들어온 사람은 80명이며, 이런 이유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정할 당시의 이유는 경제활동의 제약을 완화하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의 경우, 더 알리기가 힘듭니다. 또한, 가장 필요로하는 집단을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의 동포의 문제입니다. 560만중 절반 이상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국 500만중 100만이 구 소련 지역에서 귀화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반대하거나 해당 대상국인들이 반대해서 마찰이 있었다는 외신을 접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지켜보더라도 제외 동포법이 개선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해방 당시 시점을 상상해 봅시다. 해방 당시의 한반도 사람이나 이외의 사람이나 모두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국적법을 제정한 것은 1946년입니다.

우리 국적법을 보면, 최초의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습니다. 북의 경우에는 최초 국적소유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해방 직후, 국내건 국외건 모두가 최초의 국적 소유자여야 한다. 최초의 국적법 제정이 있었던 당시 이러한 국적 소유자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를 추정해 가야만 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 그 추정을 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헌법의 전문에는 임시정부를 재건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시 정부의 국민이었던 사람은 지금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국적포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중 국적 소유자라고 할 수 있죠.

법정의 상 왜 그들이 제외된다고 주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는 중국의 조선족이나 독립국가 연합의 동포는 정부 수립전에 해외로 이주하여, 우리 국적 소유자로 인정받은 적이 없으므로,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그들을 제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고 하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몇 개에 나라일 뿐이고, 식민지 경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의 나라들에 비교해 우리 나라국적법을 만들면 안됩니다. 이 반대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해외 동포가 국내에 도착하면 바로 자국민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외국적 동포라고 하더라도 그리스, 독일,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재외 동포가 아니라 외국적을 소유한 동포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독일처럼 돈이 많고, 이스라엘처럼 인구가 적냐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는 됩니까? 우리보다 GNP도 낮고 인구도 많은 편인데 이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적어도 돈 좀 벌어가

겠다는 건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 개념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교부 조차도 법 논리는 그렇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곳에 있는 동포는 동포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법논리라면 동포가 아닙니다. 시민 단체의 반대가 일어나니까, 하위 목록으로 정부에서는 법령을 몇 가지 내어놓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것도 중국의 교포만 대상이고 나머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조선적이나, 미주지역 중 식민지 시기 말에 하와이로 간 사람들이 전부 제외된 것이다. 565만중 절반 이상이 제외가 되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형평성이 없는 법입니다. 얼마전 재일 동포들이 주최한 전세계의 회장단회의가 있었는데 그 곳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할까? 초점은 이주 기간입니다. 이에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특정 신분이나, 특정 지역에 없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개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만을 정해놓으면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개념 자체에서 제외시키면 안됩니다. 재외동포법에는 크게 2가지의 법적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외 동포법, 그 이전에 재외 동포 재단법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포를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의 개념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현행의 재외동포법은 특별법과 기본법의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법이며, 기이한 형태입니다. 입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법에서는 재외동포의 기본적인 상황,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하고, 지금의 재외동포법같은 경우 법무부의 상황에 맞는 출입국 관련한 상황만을 언급하는 것이 맞을것입니다. 1997년 이러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지만, 외교부에서 이를 반대했었습니다. 지금의 법이 이런 외교부의 의견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외동포에 관련된 여러 법률 조항들을 모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외교부가 이야기하는 방식의 하위조항만을 만들어 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이 따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별법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전부 짜집기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외교부의 논리대로 기본법 없이 개별법대로만 한다면, 상충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체적인 시스템도 손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법과 관련된 여러 위원회 등이 있는데 위원회가 운영되지도 않습니다. 회의가 한 번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외교부는 정책 총감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위원회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 곳에서 실무진에게 맡겨야 합니다. 실제로 대만 등과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배덕호: 재외동포법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며, 현행의 개념과 정의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특별법으로는 재외동포들의 문제를 총괄해 내기

힘들다는 말씀과 함께 기본법 제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지정 토론자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셈 준비등으로 인해 많은 단체들이 참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 주신 분들과 함께 자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의견이나 질문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발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1운동 이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이 재외국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 이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국적 소유자에 대한 규명이 구체적이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훈: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영토규정이 있습니다. 영토 규정에 의해 북한의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교부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해방당시의 한반도 사람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많이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하게 이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몇 년 사이에 돌아오지 못하고, 긴 기간동안 오지 못한 중국, 러시아 등지의 사람들은 이전 다 같은 국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적지위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국적법 제정 이전에 국적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발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움직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 있다면, 국내로 오는 것 정도는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 사할린 동포들의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보는 것인가요?

박사: 사할린 동포들의 경우에 그렇죠, 예외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정부가 그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단 상황이라는 것도 그렇고 통일이 되고 나면, 그 시기에 이르면 많이 바뀔 수 있겠죠 사할린에 대한 예외적 규정을 먼저 만드는 것이 통일 이후의 상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덕호: 얼마전 총련계 재일동포들의 22일날 고향 방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나 사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발표자: 재외동포법에 관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 거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받지 못하게 되는 혜택들이 없어져 버리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배덕호: 출입국 문제에 대해 일본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자: 우리나라의 경우와 이스라엘을 많이 비교하셨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나라에 동족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국가로 퍼져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법적용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종훈: 이스라엘은 귀화를 권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 유대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단체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국제적으로 퍼져있는 유대인들을 묶어나갑니다. 또한 인수용부라는 것이 따로 있고, 국내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1/16 정도만 유대인이라면 올 수 있습니다. 흑인이라도 하더라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적에 대해 보강 설명 드리자면, 조선적에 대해 조총련으로 간주해 버린 것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 행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적의 대부분은 남한 출신입니다. 특별히 의사표시를 안한 사람인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어야만 합니다.

배덕호: 재일코리안에 맞추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조 2항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국적 동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외국국적동포로 간주하여, 재외동포 300만이 제외되었습니다. 48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했다가 떠난 자들에게만 재외동포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개념 밖에 있는 동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외 조항은 있지만, 이 부분이 개정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코리안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출입국 문제나, 현지에서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자: 어차피 내용을 말하자는 거니까, 일본어로 이야기를 한번 더 해주시고, 일본어로 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 (통역) 임시여권으로 한국에 있는 중인데, 이번 달 말까지만 한국에 있을 수 있고 일본으로 다시 떠나야만 합니다. 재외동포 법에 대해서는 일본 동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저는 KIN에 계신 분들에게 작년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고향방문이 있었는데, 그 들이나 이후 세대들이나 총련계나 민단체나로 나누는 것이 애매하다. 누군가 자신을 총련계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런줄 압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국이나 북한이나 어느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총련계인 사람들이 요즘에는 임시 여권을 가지고 남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시 여권을 받기위해

영사관을 찾아가는데, 이곳에 가면 비공식적인 돈을 요구받게 됩니다. 5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임시여권이 거래됩니다. 회사원은 30만엔 ~50만엔, 학생의 경우는 3만엔~5만엔 정도의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나 이번에 한국을 들어올 때나 이것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한국사람 누구도, 정부도 모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당시의 느낌은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사는 동포들이 갖는 느낌과 아마도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비자는 반년의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있을 수 있는 기간은 한달입니다. 한달만에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는데 왜 그러는지도 알지 못한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국 방문이후 영사관의 보조원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모국 방문단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번 방문단에 저의 어머니도 함께 왔습니다.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도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총련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살았던 고향에 50년간 돌아가지 못했는데 이들의 방문을 허용해 줬으면 합니다. 좀더 자유로운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배덕호: 시간이 거의 2시간 지났는데요 한 두가지 마지막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오늘의 워크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의 제안으로 즉석으로 투표를 해보죠.. 재외 동포의 개념이나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분.. 손들어 주십시오

이종훈: 그대로 두는게 좋은지 고쳐야 하는지 통계를 위해 이 자리에서 거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배덕호: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몇 개 조항만 바꿀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없애야 하는가를 여쭙보겠습니다.

①개정-한 명도 없음

②폐지하고 새로 제정-전원 거수

제안자: 폐지되고 다시 만든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여론의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여론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지만, 외교부의 입장은 그러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됩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제안자: 지금의 법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돈을 많이 쓰게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외 동포인 사람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서명을 진행할 때, 감정에 호소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법안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종훈: 정당에서는 생각이 많이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관심은 많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지금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안자: 오해가 생기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정에 대해서 찬성/반대인지 교수님의 의견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포에서 제외 되어버린 재외동포들이 이 법안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에 들어오려고 할 때야 비로소 그 법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보다 실제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국가 연합의 동포나, 하와이 등지의 동포들의 현실은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외동포법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혹은 외교부에서의 홍보가 더 시급합니다.

배덕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거수 해본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외동포법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되거나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외동포법은 당장 그 개정이나 폐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다들 지적해주신 것처럼 킨에서도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찾아주신 많은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외동포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2차 워크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공개 워크샵

자별없는 마음아래

# 재외동포법 개정의 방향

## 순서

사회 : 이태호 (KIN 공동대표)

### <발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이종훈 (정치학박사, 국회연구원)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방향 - 배덕호 (KIN 사무국장)

### <지정토론>

김판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재외동포사업국)

김수향 (재일동포)

### <자유토론>

2000. 11. 21.

#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공동대표 양영미, 이태호 (110-071)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71번지 삼록빌딩 503호  
Tel. (02)735-4327 Fax. (02)735-4328 e-mail kin@kin.or.kr 인터넷 http://www.kin.or.kr

#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이종훈 (국회 연구관 정치학 박사)

## 1. 문제제기

많은 이들이 지적한다. 우리 너무 민족주의적이라고... 그래서, 어떤 이는 민족주의는 이제 반역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너무나 민족주의적인 우리에게 민족주의는 반역이라고 외쳐 그는 사회적 반향을 얻었다. 하지만 난 그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어떤 민족주의를 말하느냐고... 내가 아는 한 모든 민족주의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민족주의의 폐해를 세계 각지에서 볼 수 있다. 르완다의 종족 분쟁이 낳은 대규모 학살로부터 세르비아 민족주의가 낳은 발칸반도의 인종 청소까지... 그러나, 민족주의가 언제나 이런 잔혹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동 티모르 독립운동도 달라이라마의 티벳 독립 운동도 민족주의이다. 제국주의의 침탈에 대항해 성전을 치른 식민지 민족해방운동도 있다. 우리가 자랑하는 안중근 의사도 김구 선생도 모두 민족주의의 이름아래 투쟁하였고 죽어갔다.

해방 45년, 한반도 주변 정세의 무엇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는가? 제국주의로부터 반제국주의로 극적인 전환을 하였는가? 이제 한반도 주변엔 더 이상 제국주의적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들보다 강대국이 되었는가?

민족주의를 반역이라고 외치고 이에 환호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민족주의의 대안이 무엇이나고... 세계주의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 다양한 민족, 강한 민족과 약한 민족, 거대 민족과 소수 민족이 한데 어울려 사는 다민족 세계 사회에서 담당하게 될 역할은 무엇인가? 그냥 섞여 사는 것으로 충분한가?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지배하고 차별하는 세계, 거대 민족이 소수 민족을 동화시키는 세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른바 지구촌이다.

우리 불행하게도 오래 전부터 강대 민족 틈에 끼어 살아야 했다. 그 틈에서 단일 민족국가로 유지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강대국의 한 지방 또는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과정이 우리의 역사이다. 외부의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 우리의 민족주의이다. 그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처럼 공격적이지 않은 방어적인 민족주의였다. 주변의 공격적인 제국주의 틈에서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투쟁의 산물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상황의 기본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 여전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비해 국토, 자원, 인구, 기술, 자본 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고, 21세기에도

이들과 경쟁하며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일제 시대의 친일인사, 해방 후의 친미인사가 주장했듯이 우리는 원한다면 독립국가임을 포기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 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대민족이 지배하는 다민족 국가에서 소수민족의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결코 그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장벽을 뚫으려 애쓰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가끔 장벽을 뚫고 성공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주류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주류에 편입되려고 애쓰는 영원한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민족국가란 외투를 벗어 던지고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민족주의를 버리고 세계주의자로 변신해서 국적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언제나 코리안일 뿐이다.

세계주의는 인류의 이상이고, 우리도 당연히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앞서 가면 최후의 보루를 잃을 수 있다. 민족주의는 우리의 현실이다. 어쩌면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뿌리가 굳건한 나무에 열매도 잘 맺는다. 민족주의의 현실 곧 불가피성을 인정한 위에 세계주의란 꿈나무를 심어야 한다. 세계주의는 정원에 온갖 꽃이 만발한 상태를 말한다. 각양각색의 꽃이 제 색을 내지만 총체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정원을... 물론, 그 정원에서도 꽃들은 서로 빛을 많이 받아 번성하려고 경쟁한다. 선의의 경쟁 곧 개방적이고 중립적인 민족주의만이 존재할 때 세계주의는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주의의 도전으로 평화는 자주 깨어져왔음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한다.

## 2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재외동포법을 제정하려 하자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어 반대하였다. (1)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이 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에서 편협한 민족주의로 인식될 것이며 '보편적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통치이념과 상충한다 (2)외국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를 법적용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의 제정은 거주국 정부를 자극하여 외교분쟁 유발 가능성이 지대하다 (3)외국국적동포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이 법을 시행하면 무차별 원칙에 따라 다른 시민권자, 국적자들도 동일한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도 동일한 특혜를 요구하게 될 소지가 크다 (4)재외동포의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를 유발하여 거주국에서의 자조노력 지원이라는 재외동포의 기본방향과 상충한다 (5)이런 법의 제정보다는 재외동포의 요구사항을 개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외교부의 논리처럼 혈통주의 입법은 편협한 민족주의일까? 만일 이 논리에 따른다면 많은 나라가 편협한 민족주의를 따르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속인주의 국적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성립 배경에 따라 속인주의(혈통주의) 또는 속지주의(출생지주의)를 택하기 마련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개별 국가가 선택할 문제 곧 배타적 관할사항이지 국제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다. 다시 말해 속인주의 곧 혈통주의는 국적법의 근거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입법논리이다.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많은 나라의 경우에도 혈통주의에 근거한 국적부여를 전제로 한다. 이런 국제 관례를 고려할 때 외교부의 논리는 비약이며 반대를 전제로 개발한 허위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외교부는 더 나아가 이른바 과거 국적주의가 국제 관례라는 논리를 내세워 재외동포법의 개념정의를 혈통주의에 근거한 것에서 과거 국적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바꾸고 말았다. 물론 외교부가 예시한 아일랜드, 그리스, 폴란드, 터키의 경우 과거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국적동포에게 출입국 등에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국적법이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우 식민지 지배로 정체의 단절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적법은 최초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언급이 없어 많은 착오를 낳고 있으나, 최초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는 해방 당시 국내외에 거주하던 모든 동포로 보아야 마땅하다. 조선조에도, 대한제국 시절에도,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도 조선인에게 국적을 포기할 권리가 없었다. 더욱이 제헌헌법 전문이 명시하고 있듯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에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한 다시 말해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이다.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엔 내외 동포의 구분이 없었다. 그러므로 과거 국적주의에 따라 재외동포를 규정하고, 더 나아가 '과거 국적'의 취득 시점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혈통주의를 버리고 과거 국적주의를 채택한 까닭은 사실 입법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외교 분쟁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조선족을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했고, 우리 정부는 이런 의견을 존중하여 재중동포와 재러동포 등을 개념정의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린 것이다. 복잡해 질 수 있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버린 셈이다. 외교부가 내외에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우린 민족주의적이지 않다, '우린 당신 나라와 외교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그것이 재외동포 절반을 잃는 것보다 더 국익에 유리한 것이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은 해외 화교·화인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설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국내로 화살을 돌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 수정을 가한 셈이다. 국내에서 해결하는 편이 타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에 비해 훨씬 간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외교가 무엇인지 외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간의 이견이나 갈등을 군사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외교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도 해명과 설득이 필요했다. 이 법안의 목표가 국내법적 조치에 불과하며, 중국 당국도 이런 정도의 화교정책은 펴고 있으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 취지로...

외교부는 또한 외국인의 동일한 혜택 요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이것이

문제라면 재외동포에 대해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모든 나라가 동일한 처지일텐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없다. 우리 정부의 문제인식이 이러하다면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에 대해 최근 진출한 한국인에 대해 화교와 마찬가지로 대우를 해달라고 문제제기를 할 법도 하다. 하지만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내정간섭의 성격이 강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유를 들어 외교부는 국내법의 제정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외교부는 재외동포법 제정 같은 조치가 재외동포의 모국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거주국에서의 자조노력 지원이라는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과 상충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 가운데에는 이제까지 정책이 기민정책(棄民政策)이라는 것도 있다. 이보다 강도는 낮지만 현지화 정책 곧 현지동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를 「재외동포들의 혈통, 문화 및 전통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유념하면서 거주국 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또한 존경받는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법,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한다」는데 두고 있다. 재외동포들이 거주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거주지역 사회 내에서 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점은 거주국 내 융화이다. 융화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 가능하지만, 재외동포에게 이것은 현지화 또는 동화의 의미로 다가온다. 거주국 사회에서 재외동포가 현지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불가피한 과정이다. 세대가 지남에 따라, 거주국 사회에서 기반을 닦고 주류 사회에 진출하려 하면 할수록 동화는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재외동포로서는 현지화하지 말라고 해도 현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국 정부가 현지화 정책을 펼 이유는 없다. 모국 정부로서는 현지화보다는 가능한 이들이 모국을 잊지 않고 모국에 기여해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이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이제까지 우리의 재외동포가 너무 모국 지향적이므로 현지화해야 한다고 말해왔으나, 이것은 재미동포와 재일동포 1세에나 해당하는 말일뿐이다. 재미동포와 재일동포 사회에서 2세 이후 세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재중동포와 재러동포 사회에서 3세와 4세가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말이다.

솔직히 현지화 정책은 정책일 수 없다. 이것은 현지화 과정을 관망하며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560만 재외동포에 대해 행하는 지원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독일, 이스라엘, 그리스처럼 귀환을 원하는 재외동포를 국내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역이민자에 대한 정착지원도 행하지 않고 있다. 해외 일시체류민의 참정권도 외면하고 있고, 현지 교육문화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재외동포재단을 마지못해 만들었지만 예산은 8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IMF 구제금융 체제의 조기 졸업에 재외동포의 모국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였지만, 재중동포와 재러동포를 포함한 절반이 넘는 재외동포를 개념정의에서조차 제외시켜 버렸다. 재외동포정책 담당 부서도 재외국민 1과, 2과, 해외이주과를 재외국민이주과 한 개 과로 축소시켜 버렸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

임은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부가 재외동포정책에 열의가 없음을, 그 결과 사실상 현지동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반증해준다.

외교부는 또한 재외동포법의 제정보다 개별 법률에 재외동포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외교부는 그 동안 다양한 개별 법률의 개정으로 재외동포가 요구해온 사항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해소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외교부가 적극 홍보하고 있듯이 체류허가제도 개선, 국내 재산권 행사 제한 완화, 재외국민의 병역의무 부과 요건 완화 같은 것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복잡하고도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다. 법률 전문가도 기본법 같은 형태로 일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외교부의 논리는 매우 전통적인 것으로서 그 동안 한번도 변한 적이 없는 논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래 전부터 있어온 교민청 설치, 이중국적 허용, 재외동포재단 설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같은 논리도 대응해 오고 있다. 세계화추진위원회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여 교민청의 대안으로 재외동포재단 설립(안)을 제시했던 필자는 외교부가 당시에 마찬가지 논리로 반대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재외동포재단을 만들기로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토록 반대하던 태도에서 돌변하여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요직을 외교부 출신으로 채우고 이 분야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경험이 있다. 심지어 재외동포재단법에 외부 전문가와 재외동포 대표자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도 아직 조직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현지 선심성 사업을 주로 대행하는 기관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재외동포재단을 기획하였던 필자가 상정한 거의 최악의 형태로 전략하고 만 것이다.

외교부의 적극적인 반대에 힘입어 법무부는 애초에 입법예고 하였던 안을 수정하여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중국 조선족과 독립국가연합 동포는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우리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적이 없으므로 법률해석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외동포법이 지닌 문제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외국국적동포에 관한 개념정의 조항으로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 3. 재외동포법의 과제

방향은 물론 제외시킨 동포를 포함한 새로운 개념정의의 도입이다. 이것은 물론 재외동포법의 개정으로 가능하다. 재외동포법 개정은 국회주도로 하거나 정부주도로 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건 정부의 수용태세가 중요한 변수이다. 정부는 이 법의 제정이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여론 일각에 존재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과거 재외동포하면 재일동포와 재미동포를 연상하기 마련이었고 이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부유한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재미동포의 경우에는 잘살려고 또는 안보가 불안하므로 모국을 등지고 떠난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재외동포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냐는 여론이 존재한다. 재중동포의 모국 불법체류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차별하려는 경향도 존재하고, 고려인의 어려운 상황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짐스럽게 여기는 경향도 존재한다. 이들을 과거 공산중의 국가 사람으로, 북한과 가까운 집단으로 인식해서 경계하는 경향도 일부 있다. 세계화가 유행한 이후 일반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구별하여 재외동포에게만 혜택을 주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지식인 집단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이 총체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혜택 부여나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관료사회 내에도 이런 경향이 일정 부분 자리잡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재외동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먼저, 재외동포에 관한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는 역사적으로나 실리 면에서 우리가 외면해서 안될 이유가 있다. 재외동포 가운데 재일동포, 재미동포 초기 이주집단, 재러동포, 재중동포는 일제 식민지 시대 동안에 발생한 불행한 유이민 집단으로서 항일운동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이들의 후손인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리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당위성은 여러 방면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점은 우리의 재외동포가 한반도 주변 4강국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그 동안 수 차례 강조하였듯이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 21세기에도 주변 4강국과 공존과 경쟁이 불가피하고, 우리 나라가 이들 국가에 비해 인구, 국토, 자원, 기술, 자본 어느 것 하나 뛰어난지 못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그나마 높은 교육열에 힘입은 인적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주변 4강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결코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솔직히 그들이 싫다고 거부하여도 한국인으로서 정체의를 불어 넣어주고 모국을 잊지 않고 모국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을 일반 국민이나 관료 사회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인의 세계 진출은 증가할 것이다. 뜨거운 영어교육 열풍 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청년 세대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외로 진출하여 정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재외동포정책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자 내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의 문제이다.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재외동포정책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명확해진다.

재외동포법의 개념정의 부분 개정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반대의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우리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반대의견 제시에 대해 내정간섭임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국민 방문 문제와 심양의 영사관 개설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있었고, 외교부의 전통적인 반대론을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계기이기도 했던 까닭에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반론제기보다는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내정간섭이라는 반론제기 기회를 스스로 버린 셈이다. 재외동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다시금 문제제기를 할 확률은 반반이지만, 만일 다시 문제제기를 하면 시민사회단체는 중국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이것이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외교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에는 이것이 내정문제임을 들어 중국 측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이법의 취지가 화교우대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밟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외동포법의 개념정의 부분 개정 방법으로는 (1)이것의 내용을 바꾸는 방법 (2)이 법에서 개념정의 조항을 생략하고 재외동포재단법의 개념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원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항을 「한민족 혈통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바꾸는 것이다. (2)의 경우에는 제2조(정의)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정의)를 수정하여 외국국적동포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재외동포법에서 원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 관련 조항의 개정 없이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하여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더불어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대안은 재외동포법의 폐지와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이다. 이미 수 차례 의견을 제시하였듯이 현행 재외동포법은 일종의 특례법으로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특례법이면서도 기본법 형태를 띠고 있는 특이한 법률로서 입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 재외동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을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제정한 것도 형식논리상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보다는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재외동포법은 법무부 소관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특별법'의 형태로 대체하여야 한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과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이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외동포법의 개정보다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이 더 나은 이유는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정책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정책 추진체계이다. 현재 외교부가 재외동포정책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재외동포 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온 교민청 설치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부 부처의 하나로 이것을 만들기보다는 사실상 교민청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향이 부담이 적을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는 것이다. 1995년 국무회의 의결로 재외

동포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주체로 만든 것이 총리가 주재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다. 그러나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이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위원회는 최근 외교부가 회의안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아예 열리지도 않고 있다. 심지어 재외동포법 제정과정에서도 열리지 않음으로써 실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사무국을 설치하고 실제 집행 기능을 맡긴다면 대만의 교무위원회처럼 활발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총리실에 실제 집행기능을 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재단의 소속도 외교부에서 이 위원회로 이관시켜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한다면 바로 이러한 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문제도 함께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외교부가 제안한 하위 법률의 개폐보다 이러한 기본법 제정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기도 하다.

#### 4. 맺음말 : 재외동포법을 넘어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여야 할까? 물론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다. 그리고, 개방적 민족주의의 구현이다. 우리의 민족주의가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앞서 지적하였는데, 너무 방어적인 나머지 폐쇄적인 성격을 띠어 왔음도 지적하여야 할 것 같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너무 폐쇄적인 나머지 혼혈집단이나 재외동포 집단에 대해서도 배타성을 띠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고, 이것은 유교적 가족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좁은 의미의 가족 또는 준가족 성원 외 집단에 대해서는 강한 배타성을 보이는 사회인 것이다. 일반적인 집단 성격과 별개로 개성이 강한 집단에 대한 배타성도 강하다. 개방적 민족주의는 먼저 민족공동체 내의 소수 집단에 대한 배타성의 극복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 같다. 같은 민족성원이지만 이질성이 나타나는 소수집단으로서 재외동포와 혼혈집단을 민족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민족 외래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가능하여야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한민족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으며, 개방적 민족주의도 완성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형성론은 역사가 오래지만 사실 이것의 완성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남북한의 이질화를 포함한 다양한 이민집단으로서 재외동포 사회의 현지화에 따른 이질화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각 지역 한인공동체는 거주국의 문화 그리고 현지 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지난 1세기 동안 독자적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그 결과 거주국 문화에 대한 동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한민족으로서 동질성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 남북한의 이질화도 상당하다. 이러한 동질성 상실은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의 결여로 나타난다.

각 지역 한인공동체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도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각 지역 한인공동체는 거주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결과, 존재양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재일동포와 재중동포의 경제력에 큰 차이가 난다. 물론 거주국 내의 사회계층화

도 달리 진행되어 직업이나 소득 분포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곧, 재미동포의 미국 사회내 직업이나 소득분포와 재러동포의 그것엔 차이가 존재한다.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한인공동체 내의 세대간 차이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첫째, 이주 1세와 이주 2세 이후 세대간에 동질성 보존과 현지동화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 2 이후엔 동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한민족으로서 동질성을 많이 상실하기 마련이다. 둘째, 이주 연도에 따른 세대간 차이도 있다. 곧, 100여 년 전에 이주한 이들과 최근에 이주한 이들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세대간 차이는 지역단위의 한인공동체 형성조차도 어렵게 만들곤 한다.

각 지역 한인공동체 내의 계층갈등도 지역단위의 한인공동체 형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잘 사는 동포와 못사는 동포의 한인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수 없고, 각자의 직업에 따른 시각차도 무시할 수 없다.

분단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 거주국 정부의 남북한 관계, 이주 당시의 한반도 상황과 각자의 상황 인식, 이주 이후의 경험, 혈연적 연고에 따라 동포 개개인의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이들은 남북한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통일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 방법에는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한을 지지하는 집단과 북한을 지지하는 집단, 양쪽 모두와 관계를 갖는 집단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남북한 동포간에는 이념면에서는 물론 존재양태 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남북한공동체 형성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남북한과 재외동포 사회를 하나로 묶는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위에서 살펴본 난점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어떤 동기를 부여하여 이러한 난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동기 부여는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정서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어야 한다.

생각건대, 이제까지 한민족공동체론이 다분히 정서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해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정서를 강조해서 눈물을 자아낼 수는 있지만 실제 생활과 무관하여서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상 직업상 남북한과 관련을 맺는 경우엔 자연스럽게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사업상 직업상 남북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모국과 관계는 혈연적인 것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만나서 반갑다는 말을 하고 나면 함께 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인 것이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이산가족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한번 만나 눈물을 흘리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 서먹한 것이 현실이다.

한민족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려면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이해관계 접점을 늘려야 한다. 재외동포가 사업상 직업상 모국과 관련을 맺고 이로써 이익창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의 경우 거주국 정부와 기업은 현지 한인공동체가 자국과 남북한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남북한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이를 촉진할 수 있다. 실제로 남한의 경우 그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각 지역 한인공동체의 역할도 함께 성장한 측면이 있다. 남북한간에도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류접점을 늘여가야 한다.

재외동포 사회간의 이해관계 접점 증가도 늘여야 한다. 사업상 직업상 다른 지역 한인공동체와 관련을 맺고 이익을 창출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중동포, 재러동포 사회와 재일동포, 재미동포 사회간에는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활발한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재중동포가 한국은 물론 러시아, 미국,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러한 관계 발전이 큰 기여를 했다. 이로써 한민족공동체 전체의 결속력 강화와 국제적 영향력 증가가 가능해진다.

재외동포법의 개정 또는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 접점 증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는 한민족공동체 성원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재외동포 개념정의 수정은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을 추진할 주체이다.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체의 조직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재외동포 대표자들이 주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만, 아직 이것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민족대표자회의 같은 것이 있지만 아직 응집력이 그다지 높진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남북한 갈등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주도하기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토양을 만들어 가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강화 곧 재외정책위원회의 활성화 같은 조치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 Problems of the Overseas Korean Act and the Future Tasks

Rhee, Jong Hoon  
National Assembly, Researcher

## 1. Introduction

Many people point out that we are too nationalistic ... Perhaps, that is why some one thinks nationalism is a treason. He received a public scrutiny for saying that nationalism is a treason to a too nationalistic people like us. However, I have a question for him. Which nationalism? As far as I know not all nationalisms are negative.

Today, we are seeing the calamities of nationalism in various places of the world. From a mass massacre brought by the ethnic wars in Rwanda to the "ethnic cleansing" in the Balkans by Serbian nationalism. However, nationalism did not always have such a cruel face.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East Timor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Tibet led by the Dalai Lama are also the products of nationalism. There are also holy wars of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by the colonial people who resisted the invasions of imperialism. An Jung-geun and Kim Gu, the very people whom we are so proud of, have all died in struggle under the name of nationalism.

Did any fundamental change took place in the political situ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45 years after the liberation? Did the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really change? Did they make drastic changes going from imperialism to anti-imperialism? Is it that no imperialistic state exis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oday? Or is it that we have become a stronger nation than them?

I have a question to those who cry out that nationalism is a treason. What is the alternative to nationalism ... internationalism? If so, what are our tasks? What is the role of our people in a multi-national society where diverse nations, some strong, some weak, some many, and some few, live together. Is living together enough? A world where a strong nation dominates and discriminates a weaker nation and the majority assimilates the minority is the very world so called the global village which we live in.

Unfortunately, from a long time ago we lived among the strong states. It is a nearly miracle for us to maintain a homogeneous nation-state. Despite many invasions, the efforts and attempts not to become a minority or a province of a stronger state are our history itself. Our nationalism is that which naturally developed in the process of resisting the foreign challenges. This

nationalism is not offensive like imperialism, but is a defensive nationalism. It is a product of fierce struggles to survive amongst the surrounding offensive imperialistic states. Moreover, unfortunately, the situation did not change. We are still disadvantaged in territory, natural resources, population, technology, capital, etc. compare to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In the 21st century, we must still find a way to co-exist while competing with them.

As the pro-Japanese Korean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pro-US Koreans after the liberation have argued, we can give up our independence and become a state of the US, China, Japan, or Russia if we desire. However, the price is the fate of a minority living in a multi-national state dominated by the majority. We can never be the host of that state. We will live out a miserable life trying hard to break the barriers created by visible and invisible discriminations. There will be some who break through the barriers, but they will never form a main stream. They are nothing but an eternal few who tries to become part of the main stream.

The problem is simple if we can achieve happiness without the outer layer called nation-state. There is nothing to it than giving up nationalism and transforming to internationalism to live the life without never having concern about nationality. The problem is that the reality will never permit this. In the real world, we will always be Koreans.

Internationalism is an ideal of humanity and we, too, should seek it. However, if we go too far ahead, we may lose our final stronghold. Nationalism is our reality. Perhaps, it is something we do not like to admit. Nevertheless, a tree with a strong root bears abundant fruits. After accepting the reality of nationalism, the inevitability, we can plant a tree of dream called internationalism on top. Internationalism is like a garden with all kinds of flowers in full bloom. Flowers different in shape and color radiate their individual colors, but the garden is beautiful as a whole .... Of course, even in that garden, individual flowers compete with each other to receive more light and grow. Good will competition, in other words, inclusive and neutral nationalism, only then, internationalism can be realized. However, we should never forget that a few of expansionist and aggressive nationalisms have disturbed the world peace.

## 2. The problems of the Overseas Korean Act

At the time of the legislation of the overseas Korean ac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reafter the MoFA) raised an opposition with the following rationales. 1) The legislation of this act centered on heredity can be seen as a parochial nationalism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contradicts the policy of the President who values "universal internationalism." 2) The legislation of this act which seeks to have legal jurisdiction over the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will provoke the resident country's government most likely to escalate into a diplomatic dispute. 3) If this act giving certain benefits to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should become in effect, in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indiscriminatio, other



nationalities and citizens may demand equal treatment. Moreover,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it is likely that foreigners may demand equal treatment. 4) It will lead to a high expectation of the mother country's government by the overseas Koreans contradict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overseas Koreans policy which is the policy of supporting the efforts for self autonomy in the resident country. 5)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reflect the demands of the overseas Koreans in pre-existing statutes instead of legislating this act.

As the above rationales of the MoFA insist, is the legislation of a heredity centered act a narrow-minded nationalism? If we were to accept this logic, many countries would be following a narrow-minded nationalism. This is because many countries have adopted the nationality principle for their nationality law. States chose either the nationality principle (heredity centered), or the territorial principle (place of birth centered) according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Furthermore, this issue is completely the choice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herefore, is an exclusive right, a matter which cannot be imposed through international law. In other words, the nationality principle or the heredity principle is a legal principle normally accept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the basis of nationality law. Even in countries with dual nationality, the heredity principle is presumed in recognizing nationality. Considering such an international custom, the logic of the MoFA is unconvincing as it is nothing more than a fallacy created for the sake of opposing.

In addition, the MoFA have changed the definition of the overseas Koreans based on the heredity principle to the one based on the past nationality principle arguing that it is an international practice. Indeed, it is a fact that Ireland, Greece, Poland, and Turkey, the countries which the MoFA alluded to, grant certain privileges to their expatriates with foreign nationality.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y have adopted heredity centered nationality law and they have not experienced a discontinuity of identity due to colonial rule. Despite the uncertainty resulted from no clear confirmation of the first people with ROK nationality, it would be logical to consider all Koreans living in the Korean peninsula and abroad at the time of the liberation to be the first bearer of ROK nationality. At the times of Joseon, Imperial Korea (Daehanjyeguk),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s had no right to renounce their nationality. Furthermore, as the preamble of the First Constitution stipulates, the 1948 Korean government is a government upholding, in other words, succeeding the legalit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founded in 1919. Therefore, defining overseas Koreans according to the past nationality principle and determining the time of acquiring the "past nationality" to be 1948, the year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historically or legally wrong.

The reason for the adoption of the past nationality principle instead of the heredity principle seems to be, in fact, not a legislative reasoning but a realistic reason of the possibility of diplomatic disputes. In reality, the Chinese government expressed a dissenting opinion on the proposal to include Korean Chinese in the category of overseas Koreans, and in response to such

a opinion, the Korean government redefined the concept of overseas Korean excluding Korean Chinese and Korean Russians altogether. It solved what could be a messy problem in a simple way. The messages which the MoFA wanted to give to domestic and abroad were "we are not nationalistic," and "we do not want any diplomatic dispute with your country." However, one cannot help but to question what we have gained and whether it is worth losing the entire half of the overseas Koreans.

As we all know, China has very positive policies toward overseas Chinese. The MoFA could have pointed out this fact and tried to convince the Chinese government, but, instead, it turned the issue to domestic and revised the Overseas Koreans Act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deed, it is much more easy to solve the issue domestically than convincing a foreign government. Nevertheless, the question of what diplomacy is remains to be asked to the MoFA. If diplomacy is to resolve different opinions between two countries not by military but peaceful means, the issue should have been dealt with attempts to explain and convince that the intention of the Act is to be a domestic legal measure only and that even the Chinese government practice a similar policy toward overseas Chinese.

The MoFA also pointed out the possibility of foreigners demanding the same treatment. If this is the case, then every country with policies supporting their expatriates would have the same problems. However, there is no such reported case as yet. If this is our government's reasoning, then it could cross demand to the Chinese government to treat Koreans in China the way it treats to overseas Chinese.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and the reason is that the MoFA thinks such a demand has a strong characteristic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This is a not sense. Nevertheless, the MoFA raised an objection to the legislation of a domestic act with such a nonsense as a reason.

The MoFA pointed out that a measure like the legislation of the Overseas Korean Act would bring about a high expectation of the mother country's government amongst overseas Koreans which would contradict the basic direction of the self autonomy support policy toward overseas Koreans. One of the extreme criticisms against our government's policies toward overseas Koreans is that the past policies have been deceitful. In a lesser degree, some criticized the policies as an "assimilationist policy." The basic aim of our government's overseas Koreans policies is "to support overseas Koreans within the framework allowed by the laws and institutions of the resident countries,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s to have stable live and grow as model and respectful members of the resident society considering that heredity, culture, and tradition of overseas Koreans are rooted Korea." In other words, it will support overseas Korean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sident regions and integrate into the resident society. As we can see from this, the main focus is integration into the resident country. While the word "integration" can be interpreted in different ways, overseas Koreans consider this word to mean assimilation. Assimilation of overseas Koreans into the resident society is in some sense ordinary

and an inevitable process. With coming of new generations, as they create a foothold in the resident country and as they seek to enter into the mainstream society, assimilation is inevitable. In other words, for overseas Koreans, they have no choice but to assimilate even if asked not to.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for the mother country government to have an assimilationist polic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other country government, it would be more logical for it to support overseas Koreans not to lose their identity in a hope that they will not forget the mother country and contribute to it if possible rather than having an assimilationist policy. The government has so far argued that our overseas Koreans are too mother country oriented, thus, need to be assimilated. However, this applies only to the fir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the US or Koreans living in Japan. The statement is inappropriate for Korean American communities and Koreans in Japan with a higher percentage of second and later generations, and for Korean Chinese and Korean Russian communities whos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are now the mainstream.

Frankly, the assimilationist policy cannot be a policy. This is nothing more than standing aside and observing the process of assimilation. In fact, the support of 5.6 million overseas Koreans by our government was very inadequate. It has not welcomed overseas people who wish to repatriate unlike Germany, Israel, and Greece, nor it have any settlement support for reverse immigrants. It is denying the right to absentee ballot to temporary overseas residents. Support of cultural education to the abroad communities is also very much lacking. It has reluctantly established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but its budget is mere 8 billion won. It legislated the Overseas Korean Act recognizing the need to attract overseas Koreans' investment for the early completion of IMF Financial Relief regime. However, it has excluded a half of the total overseas Koreans including Korean Chinese and Korean Russians from th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Even the governmental office overseeing the overseas Korean policy was reduce to one division from 3 divisions. Such a series of change shows that our government, particularly the MoFA, has no interest in the overseas Koreans policy. As a result, it has proved in negation that, in fact, it is supporting the assimilationist policy.

In addition, the MoFA has argues that it would be best to reflect the demands of overseas Koreans in the individual statutes and not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Act. The MoFA also argues that it has satisfied many of the demands through various statutes in the past. This is true. As the MoFA actively promotes, there have been many ameliorations such as the reform of residence permission system, the easement of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Korea, and the conscription exemption conditions, etc. However, many legal experts commented that such changes are inefficient and complex. They added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measures in a form of a package deal comprehensive law.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e reasoning of the MoFA reviewed so far is very traditional one and has not been changed at all. It has responded to the past demands in a consistent way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 of Overseas Koreans, allowing dual nationality, the establishment of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nd to the legisl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Act. As a researcher of the Committee to Initiate Globalization who once proposed the proposal to establish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Office of Overseas Koreans, I remember vividly how the MoFA rejected the proposal with the very same reasoning. However, when the decision was finally made to found the foundation, I was stunned to have witnessed how the MoFA made a sudden change of attitude and appointed the former employees of the MoFA in the foundation personnel and in the seat of the board of director excluding a group of experts in the field. Even though the foundation must have an advisory committee composed of outside experts and representatives of overseas Koreans in pursuant to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ct, it has not been realized yet. As a result,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has degenerated into an institution carrying out token gestured activities of the embassies or the consulates. It has turned into the worst form I have imagined as I plann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Going along with the active resistance from the MoFA, the Ministry of Justice revised its draft to define the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as "a person with Korean nationality and/or his or her family member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have been determined by the president" while making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hat "Korean Chinese and overseas Koreans living in the CIS do not apply in a legal interpretative sense since, having migrated before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hey have not been confirmed of being Korean nationals."

### 3. The Task of the Overseas Korean Act

The task is an introduction of not only a new direction but a new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including the excluded people. This is, of course, possible through an amendment of the Overseas Koreans Act. An amendment can be made by an initi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government. In either case,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is important variable. It is a fact that the government has received a strong resistance from NGO's after the legisl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Act. However, the reason it has withstood despite the strong resistance is the negative public awareness of overseas Koreans.

In the past, overseas Koreans meant Koreans living in Japan or Korean Americans and, generally, they were more affluent than us. Especially, in the case of Korean Americans, they were thought to be a group who left the mother country for a better life or due to public insecurity. Due to such awareness, there is a public opinion questioning whether there is a need to grant privilege to overseas Koreans when Korea have people in worse condition. As the number of illegal Korean Chinese residents increases, there is a tendency to discriminate against them. As the difficult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s in the former USSR are publicize, there is a

tendency to think of them as a burden. This is partly due to a thinking that they are people to be cautious since they were in the former communist states close to North Korea. There exists an intellectual group who disapproves to the granting of privileges only to overseas Koreans and not to ordinary foreigners at the time of globalization. As a whole, these kinds of tendencies have contributed to the forming of a negative image on giving privilege or support to overseas Koreans. To certain extent, such an image can be found in the minds of bureaucrats.

How, then, can such a negative awareness be overcome? What are the means to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of overseas Koreans? First of all, there must be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overseas Koreans. There are historical and practical reasons why we should not ignore the overseas Koreans. We must first remember that amongst the overseas Koreans, Koreans in Japan, early Korean immigrants to the US, Korean Russians, and Korean Chinese, as unfortunate migrants crea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anti-Japanese movement. We must have interest in them who are the descendants of these people. In a practical aspect, there are numerous reasons why we should be interested. First is the fact that they are residing in the four super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s I have emphasized many times, this is our unique advantage. Considering that it is inevitable for our country to co-exist and compete with the four super powers even in the 21st century, and that we are disadvantaged in population, territory, natural resources, technology, and capital so that our only asset is the human resource, created by a zeal for high education, we can never be indifferent to the overseas Koreans living in the four super powers. Plainly, the situation is that we must instill into them the Korean identity and make them not to forget the mother country and contribute to the mother country even if they reject us. As time goes by, more and more Koreans will go out to the world. This is because our young generations who grew up in an obsessive drive for English education will actively move out and seek to settle in abroad. This is exactly why the overseas Koreans policy is our very problem and the problem of our sons, daughters, grand sons, and grand daughters. If we desire them to live as Koreans and if we realize the condition in which they have to live as Koreans, what must be done in the overseas Koreans policy becomes very clear.

In regards to amending th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in the Overseas Korean Act, the issue of how to overcome the opposi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also one of the tasks. In fact, the MoFA should have made it clear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opposition is an act of intervention in the Korean affairs. However, it seems that the MoFA decided to resolve the issue peacefully by accepting the opposition in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issues at hand like the President's visit to China at the time, the opening of a consulate in Simyang. Of course, there is another reason which confirmed that traditional position of the MoFA. Thus, it lost the very opportunity to raise the counter argument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The possibilit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raise another opposition to the initiative for amending the

Overseas Koreans Act is 50/50, but if it does, most likely there will be strong protest from NGO's possibly leading to a diplomatic tension. It is unclear how the MoFA will react when this is the case, however, one hopes that it will counter argue to China saying it is an intervention in the Korean domestic affairs while convincing China that the Act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benevolent overseas Chinese policy.

As for the ways to amend th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there are 1) amending the content, and 2) eliminate the definition clause and amend and invoke the definition clause in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ct. In the case of 1), Article 2(2) should be amended to "a person of Korean heredity who have acquired foreign nationality." In the case of 2), Article 2(definition) should be omitted entirely and amend Article 2 of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ct to positively stipulate the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and then invoke the clause in the Overseas Koreans Act. Aside from these two methods, there is a method of renewing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2(2) of the Overseas Koreans Act without any further amendments in includ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the defin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other alternative which must be considered seriously along with the option of amending the Overseas Koreans Act is abolishing of the Overseas Koreans Act and legislating the Basic Act of Overseas Koreans (hereafter Basic Act). As I have mentioned many times, the current Overseas Koreans Act is a kind of special act inappropriate to stipulate ordinary circumstance. Despite being a special act, the current act is a peculiar act taking the form of a basic act unfitting for the legislative convention.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act was proposed not by the MoFA, the main administrative body, but by the Ministry of Justice is in itself illogical. Therefore, what is needed is the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of Overseas Koreans while changing the current Overseas Koreans Act into a Special Act Concerning the Residency and Immigration of Overseas Korea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the Basic Act to determine the basic direction of the overseas Koreans policy and the legal status in a comprehensive dimension and amend or legislate other statutes based on the Basic Act as a follow up.

The reason that the Basic Act is better than the amendment of the Overseas Koreans Act is that it has an advantage of resolve the problems of overseas Koreans policy and related issues as a bundle. In the field of overseas Koreans policy, the main issue is the policy enforcement system.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current system because while the MoFA is the main enforcer of the overseas Koreans policy, it has taken a very passive stance. It is also possible to think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 of Overseas Koreans, the demand of many overseas Korean communities and experts from long time. However, it would be less burdensome to create an organization that play the role of the office instead of creating a governmental office. The immediate consideration in this direction is the creation of a executive bureau in the Committee

for Overseas Korean Policy. This committee presided by the Prime Minister was formed in 1995 by the decision of the Ministerial Meeting to be the highest decision making body of making overseas Korean policies. However, the meeting of the Committee is not held in recent days because the MoFA did not call the meeting where the Chief of the Overseas Resident and Consular Affairs Bureau is the executive staff. Even i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Act, the Committee did not meet failing to carry out its function. If this Committee is revitaliz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executive bureau to carry out its functions, I believe it could serve an active role like its counterpart in Taiwan. If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cannot create a real functionary organ, then an alternative of promoting the committee to a presidential commission should also be seriously considered. In this case,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should also be transferr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from the MoFA. Such changes in the policy enforcement system will be resolved with the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A legislation of such a basic act instead of amending or abolishing lower statutes proposed by the MoFA is also the recommendation of legal experts.

#### 4. Conclusion : Beyond the Overseas Koreans Act

What should be the ultimate aim of the campaign for the amendment of the Overseas Koreans Act? Of course, it is the formation of global Korean community. Moreover, it is the realization of inclusive nationalism. I have already mentioned that our nationalism is defensive in its characteristic. However, it is too defensive to a point it has a characteristic of being enclosed. Our nationalism is so enclosed that it excludes interracial groups or overseas Koreans. Obviously, our society in general is strongly exclusive against minority groups. I believe this is because we are rooted in the family centered Confucian values. In a narrow sense, our society is strongly exclusive against groups outside the family or semi-family. We also have strong dislikes for groups with strong personality, and therefore, stand out from ordinary groups. Inclusive nationalism first starts with overcoming the exclusivity against minority groups within the global Korean community. By accepting overseas Koreans and interracial people who are different into the community, we can increase our understanding of foreign and different cultures. This must be realized in order to build a global Korean community composed of diverse groups and have inclusive nationalism.

Despite its long history, the formation of the global Korean Community is not an easy project. Disparity of the North and South and disparity of various overseas Koreans due to their assimilation to the resident countries are serious matters. Each overseas Korean communities have gone through its own development process influenced by the culture and the minority policy of the resident countries. As a result, they have assimilated considerably with the resident culture to the point the congruity with the global Korean Community is disappearing. Disparity among the

North and South is also vast. Such losses of congruity are reflected in the lack of the sense of belong to the global Korean Community.

The social and economic differences among the overseas Korean communities are also one of the barriers. As a result of each Korean community being influenced by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resident country,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their modes of existence. For example,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economic powers of Korean Chinese and Koreans in Japan. There are also differences in the income distribution due to diverse patterns of stratification. Obviously, the income distribution of Korean Americans in the US is very different from the income distribution of Korean Russians. There would be no need to speak of the difference of economic power between the North and South.

Generation gap in overseas Korean communities is also becoming a barrier. First, there are clear difference in the aspect of preserving congruity and assimilatio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immigrants. Generally, the second generation would have assimilated very much and have lost the homogeneity of Korean. Second, there is generation gap according to the time of immigration. In other words, there exists a difference among the people who immigrated 100 years ago and the recent immigrants. Such generation gaps make even the formation of Korean community in the regional level difficult.

Stratification within a Korean community in different regions is also an obstacle to the formation of a Korean community. The perspectives on the Korean community among affluent and poor overseas Koreans will not be same. One cannot ignore the difference that arise from different occupation.

The division is also a variable which cannot be ignore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he resident country's relations to the North and South,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 time of immigration, individual situation, experience after the immigration, and personal ties. They display different reactions to the North and South. Although everyone sees the necessity of reunification, it is hard to find an agreement in the method of reunification. In most cases, they are divided into groups, supporters of South Korea, supporters of North Korea and those who have ties to both. Furthermore, not only ideologically but also in the modes of existence, the North and South Koreans differ very much. The formation of the North and South Community would not be so easy.

In order to unite North, South and overseas Korean communities into one to create the global Korean community, obstacles examined above must be overcome.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template on through what kind of cause we can overcome the difficulties. Such cause can be based on interests or emotions. Concretely, however, it must be both.

If the past attempts to form the global Korean community have placed more emphasis on the

emotional part, I believe we need to concentrate more on interest from now on. It is possible to arouse tears by calling on the emotional part, but it would be difficult to form a continual relationship without any connection to the real life. Business wise or job wise, one can naturally get interested in the formation of the global Korean community in the case related to the North and South. However, if there is no relationship with the North and South, business wise or job wise, the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country is sure to be limited to blood ties. There is nothing more to say nor do after greeting one another. It is a reality even for the North and South relation that while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re the utmost important agenda, once they meet and shed tears, there is not much else to do together.

In order to make the global Korean community a reality, overseas Korean communities and the mother country must expand their point of contact. Overseas Koreans should be encouraged to form ties with the mother country in business or job related ways and make profit. For the case of overseas Koreans, it is nature for the resident country's government and companies to expect the Korean community to contribute to the resident country and political and econom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Promotion of the international statuses of the North and South will stimulate this further. In fact, in the case of South Korea, as its political and economical status increase, the role of overseas Koreans grow together. Substantial exchanges centered o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must be increased.

Social interest among the overseas Korean communities should also be increase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ystem of profit by building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overseas Korean communities worldwide. In fact, among the communities of Korean Chinese, Korean Russian, Korean American, and Koreans in Japan, there has been an strong development of relationship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ystem. For example, such a development of relationship has contributed to the migration of Korean Chinese to not only South Korea but to Russia, the US, and Japan. Through these, the overall increase of the ability to come together and international influence is possible.

Ultimate goal of the amendment of the Overseas Koreans Act or the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must be such a formation of the global Korean community. In other words, it must include plans to increase point of contact and interests. Of course, all these are possible only when there is a presumption that all members of community are in equal relations. The starting point would be the revision of th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is the subject with ability to do this. At a situation where the North and South are in confrontation, the task of organizing such a subject is not easy.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overseas Koreans who are in a neutral position to take the lead, however, this is not possible yet. For example, there is the Conference of Korean Representatives, but still its influence is weak. Our government can be the leader, but there is the possibility to increase the tens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It is desirable for our

government to concentrate on creating a firm base for the formation of the global Korean Community with a long term vision instead of leading it from the front. I believe measures like strengthening organizations for overseas Koreans and revitalizing the Committee of Overseas Korean policy would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effective progress of such initiatives.



#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배덕호 (KIN사무국장)

## 1. 해외동포권 150년, 공백과 차별의 긴 역사를 보며

해외동포권의 이주사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보면, 그 첫째는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에 이르는 시대, 둘째는 일제하의 암흑기에 탄압과 수탈 그리고 식민정책으로 인한 민족의 대이동의 시기, 셋째가 1960년대로부터 최근에 이르는 소위 「제트기 이민」 시기로 구분지을 수 있다. 짧게 보더라도 그 역사는 150년 내지 90년에 걸쳐 있음에도, 우리의 역사 교과서나 지식 체계 어디에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여 그 역사가 멈춰버리고, 소수민족으로만 감내해야만 했던 차별과 공백의 긴 역사였다.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만주지방과 그리고 시베리아지방으로의 이주는 근대 이민의 정의와 개념으로 볼 때, 이민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민사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이민1세대의 출발점은 1902년부터 1908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으로의 이주이다. 이는 '사진신부'로 대표되는 근대 이주사의 출발점이며 하와이에서 미본토, 미본토에서 멕시코까지 이어져 멕시코 한인이민5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엄혹한 일제시대 한반도권에서의 수백만의 유이민은 크게 나누어 북으로는 간도지방과 만주지역의 이주이고, 남으로는 일본으로의 이주였다.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간도지방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지역 주민들이었으며 일본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은 오늘날 재일동포의 지역별 구성비에서도 볼 수 있듯이 90% 이상이 남한 출신자들이었다. 뒤이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부터 출발하는 '제트기 이민'의 시대는,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 이주과정이며 국적있는 형태의 이민의 특성을 띤 유럽권 및 미주권으로의 이주의 역사임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해외동포권 형성 과정이 이처럼 일제식민지시대 전후, 남북분단 전후를 배경으로 한반도 상황이 빚어낸 강압적인 이주사 자체라는 사실을 운동은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식민통치시대 이후 90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는 50년의 뼈아픈 과거 역사를 배경으로 강제 형성된 이들 대다수 해외동포권은, 이제 전세계 142개국에 걸쳐 564만명의 해외동포와 20만명이 넘는 해외입양인으로 구성되며 남한인구 대비 12%(남북한 인구대비 8%)에 이르고 있다. 사실 이러한 통계수치조차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1991년 이후 중국 조선족동포 1,922,097명과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437,680명을 해외동포권에 포함시킨 이후의 결과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 해외동포권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가

능하며 이들의 역사적 인권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법적 제도적 제보호장치에서 일상적으로 벗어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놓이고, 그 어느 나라의 관심권에도 벗어나 있는 이들 문제에 대하여 그 해결주체와 정책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 2. 올바른 해외동포법 제정을 위한 1999년 운동

KIN은 남북분단 50년 동안 제한되었던 무국적재일동포(조선적)의 국내자유왕래캠페인(시민서명캠페인)을 98년 12월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서울시민 1400명 서명), 99년 5월 해외동포와 해외입양인을 위한 비자캠페인(서울시민 1000여명 서명)을 벌이던 과정에서 정부(법무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법안이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로 국회에 계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하여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 문턱을 넘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권을 광역화·국제화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에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제한과 부동산취득·금융·외국환 등에 있어서의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재외동포들이 요구하는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납세, 해외에서의 선거권 행사, 외교관계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이중국적 허용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수용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한 동포중 상당수가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고립감과 모국에서의 경제활동 제약, 연금지급정지 등을 걱정하여 거주국의 국적취득을 꺼리고 거주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정착하여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거주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러한 '해외동포의 법적지위 확보 및 권리확대'라는 입법취지의 정부법안이, 실제로는 법안 제2조 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개념 정의로 인해, 구체적으로 300만 해외동포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차별법안이자 반역사적인 법안으로 전락했으며, 국내 시민사회·학계·법조계, 특히 각 국 해외동포권의 최소한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실에 경악,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99년 재외동포법안 개정과 국회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거부권행사를 요구했다.

요약했듯이, 99년 '평등한 해외동포법 제정 캠페인'은 국내 64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서명 동참과 국내언론의 광범위한 지지, 그리고 해외동포사회의 동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은 작년(99년) 8월 23일 재중동포 3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대상(사건번호 99헌마494)이며 미제사건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00. 9. 30. 현재)

국회통과된 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내 재중동포들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 된 바 있고 (국회의 권고사항→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법무부의 <재외동포법 정부대책반> 운영을 통한 보완대책) 등이 발표되었으나, 법률 개정을 전제하지 않는 여론녹이기 임시방편 용일 뿐이었다.

KIN은 국내 정세상 새로운 연대단위를 구성하기 힘든 점 등을 감안,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해외동포권 이주역사 및 그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내부 워크샵을 진행해왔고, 국내 해외동 포 및 각 국 해외동포권 대상의 재외동포법 홍보 및 설문작업, 재외동포법관련 1차, 2차 워 크샵을 진행했으며, '재외동포법1년과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와 재외동포법 백서 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3.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방향 - 해외동포의 역사적 인권 실현을 위하여

먼저,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은 단순히 법률조항 개정의 문제를 넘어, 해외동포권의 잃어버린 150년 과거역사를 소중한 역사의 한 장으로 복원시키는 것이고, 이들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정치화시켜내는 것, 권역별 해외동포의 역사적 인권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개정운동은 다양한 해외동포 권역에서 소수민족으로 차별 받던 아타집단의 역사적 삶과 국내 타아집단의 현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 미래 한반도 권에 필수불가결한 인권, 평화, 공존의 가치를 확대시키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해 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지향점을 바탕으로 하는 재외동포법의 개정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 들의 조합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식과 체계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 시민사회단체간 개정준비단위 구성
- '재외동포지위향상추진협의회'를 활용, 각국 해외동포권의 의견수렴과정 전제
- '10만 범국민서명운동' 같은 등의 구체적인 물리력이 필요
- 타국의 입법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분석 필요
- 시민단체-학계-법조계-해외동포권-국화-정부부처간 의사소통기구 구성
- 역사성과 형평성에 합치하는 개정청원안 마련
- 해외동포권에 대한 장기적, 정책적 접근법의 모색

끝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재외동포법에 대한 개정청원안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있으나 이는 우리가 주목하는 재외동포개념과 관련된 개정안이 아니므로 간단히 개정안에 대해서만 참고하려고 한다.

### <참고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강재섭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0. 9.

발 의 자 : 강재섭·강신성일·고홍길·권오을·김방림·김부겸·김원웅·배기운  
·이상배·이인기·이원형·이해봉·조용규 의원

찬 성 자 : 12인

의안번호 : 122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할 경우, 동법상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그런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이법의 시행일인 1999년 12월 3일 이후에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보상금 수급 혜택이 주어짐. 그러나 1999년 12월 3일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자는 여전히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 택을 동법률 시행일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은 국적상실에 불구하고"를 "외국 국적동포는"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는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계속 지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 상금)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 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은 국적상실에 불구하 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 상금) 외국국적동포는 ----- ----- ----- ----- -----

1. 재정소요요인 및 관련조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전에('99.12.3) 국적을 상실한자에 대하여도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계속수령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16조)

2. 재정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국적 상실자
  - '99.12.3 이전 국적상실자 120명중 수권변동으로 연금을 승계하고 있는 자 11명을 제한 109명에 대하여 보상금 추가 지급
- 미국적취득자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호에 의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는 대략 5명 정도로 추계
- 기국적상실자 및 국적미취득자 114명 대해 보상금 월평균 지급액 643천원 적용하여 추계
- 인원은 무변동, 월평균 지급액은 연평균 5% 인상 추계

나. 추계결과

- 2001년~2005년중 4,859,136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세출예산

3. 제도개선등 기타사항

<제도개선사항>

- '99.12.3 이전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보훈연금등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99.12.3 이후 국적상실자와의 형평성 도모

<기타사항>

- 없음

<연도별 재정소요 추계표 >

(단위:천원)

	2001	2002	2003	2004	2005
세입					
세출	879,624	923,400	969,912	1,017,792	1,068,408
국적상실자 보상금	879,624	923,400	969,912	1,017,792	1,068,408
재원조달					
□ 중앙정부	879,624	923,400	969,912	1,017,792	1,068,408
○ 일반회계	879,624	923,400	969,912	1,017,792	1,068,408
○ 특별회계					
○ 기금					
□ 지방자치단체					
□ 기타					

## 제3차 공개워크숍 회의록

이태호: 해외동포들에게 여론조사 중입니다만 인지가 부족한 상태이고 오는 28일에 재외동포에 설문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재외동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워크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KIN 대표 이태호입니다. 이종훈 박사님을 모시고 재외동포법에 대한 문제점 향후과제, 개정방향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종훈: 반갑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몇차례 발표를 해서 새롭게 이야기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만, 재외동포법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주의가 좋은 점과 나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티모르와 르완다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주위에 제국주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사이에서 수많은 침략을 감내하며 저항적인 민족주의가 클 수밖에 없었고 제국주의의 공격적인 민족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바뀐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는 경쟁과 공존의 세기입니다. 물론 세계주의자로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나라고 부인할수 없으며 민족주의는 현실입니다.

재외동포법을 제정할 당시 외교부의 논리는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는 편협하게 비춰질수 있으며 김대중 정부의 외교정책과 어긋난다. 또한 외교적 문제가 생길수 있다. 재외동포의 고국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주의에 따르면 많은 나라들이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역사적인 배경으로 속지주의이지만 실은 대부분은 속인주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중국적을 가질수 있는 나라도 민족에 따라 자국의 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과거 국적주의가 국제관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나라는 식민지배를 가져서 법통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에게는 국적을 포기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이 아니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국외에 있던 동포들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할린과 중국에 있던 동포들은 한번도 국적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교부의 국제 분쟁 발생소지를 막자는 논리입니다. 기실 중국정부는 재외동포법에 중국 조선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화교와 화인으로 해외에 있는 5000만에 해당하는 중국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사용합니다. 사실 외교부가 중국정부를 설득할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 있는 동포들을 위한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법무부의 활동을 외교부가 막은 것



입니다. 그런데 외교가 무엇입니까? 국가간의 갈등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었을 때 국내로 들고 들어와 그 해결을 막은 것이 외교부입니다. 사실 재외동포법은 국내로 들어왔을때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인도 여러나라에서 동일하게 시행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내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고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 동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민 정책 즉 사람을 버리는 정책입니다. 거주지에서 융화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교민들과의 리셉션에서 그들과 동화하라고 말합니까? 동화는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생존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국이 현지화를 도와야 합니까? 고국은 동포들을 한국사람으로 인정하고 동화정책이 아니라 의식이 흐려지는 23세대의 상황에서 현재의 정책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재외국민에 대한 법적위치가 불안정하고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거주해도 정치에 참여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외교부는 아무것도 안하며 우리동포의 현지동화를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법 재정이전부터 있었던 외교부의 논리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을 받고도 버티고 있는데 이것은 여론의 일각에 있는 인식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잘먹고 잘살려고 건너간 사람들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들을 위한 제도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냐는 의견과 반 민족주의적인 경향으로 인한 인식들입니다. 이러한 난관들의 극복을 위해서는 역사적, 실리적, 현실적인 정확한 상황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1948년 이전에도 우리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또한 실리적으로도 한반도는 4개 강대국에 대해서 가지는 강점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강점은 재외동포들이라는 인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우위의 자산은 교육열과 약간의 산업자본과 인적자원인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재외동포들과의 교류를 증대시켜야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들 자신도 언제 해외로 나가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외교부가 초기에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빈관련 방문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내정간섭의 반론을 제기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실시할 경우 중국정부가 반발할 것인가 그러나 논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반발이라고 해도 그 파장이 아주 미약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자라고 규정하고 소급시키면 문제는 법적으로도 간단해 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재외동포법의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이 재정되면서 정책위원회는 회의가 한번도 소집되지 않았습니. 만약에 총리실에 특위를 만드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대통령 직속으로도 여성특위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얼마전엔 국회의원들이 텔런트 홍석천씨를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대표적인 소수집단인 동성애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이야기 밖에 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소수집단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법 이전에 소수집단에 대하여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방적인 민족주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형적으로 완전히 다른 남북한 사람들의 이질화된 모습을 극복하고 한민족 공동체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재외동포의 역할은 남북한을 다 포용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남북한에 대한 조정을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 공동체의 구성을 원활하게 이룰수 있을 것입니다.

이태호: 재외동포법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색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KIN사무국장인 배덕호씨를 모시고 그 방향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덕호: KIN 사무국장 배덕호입니다. 재외동포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KIN에서 작년에 재외동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반면에 국내에서 재외동포법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면서 활동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원론적으로 해외동포권은 150년의 역사적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식 어디에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공백으로 남아있고 역사가 멈춰버린 시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의에 의한 한반도 상황에 의해 강제적인 이주의 역사입니다. 초창기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의 이주를 시작해서 한인 5세까지 존재하는 것이 러시아와 멕시코까지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550만의 해외동포 그리고 해외 입양아 20만명을 포함하여 약 570만의 해외동포를 가지고 있으며 이도 고려인을 비롯한 200만 동포들은 91년 이전까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운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역사적인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일제의 과거 역사 청산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점이며 긴 역사적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가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그 어느 나라 정부의 관심에도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법개정 뿐만 아니라 총체적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개정에 대한 시작은 캠페인은 무국적 제일 조선적에 대한 국내입국 자유화에 대한 것이었고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읽어 보시구요...독소조항 2조 2항을 포함한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가 개탄할 정도로 갑자기 통과시킨 것입니다. 수백만 해외동포를 규정하는 법이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의견 수렴없이 비민주적으로 그대로 통과될 수 있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은 8월 1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통과된 법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어려운 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해외동포법 제정 캠페인은 여러 해외동포,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제대